

■ 금융개혁 개요

I.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금융개혁

01. 긴급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에 관한 건
02. 주식 분산 및 내자동원 방안(안)
03. 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0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안)
05. 8·3조치 효과
06. 1973년도 8·3조치 이후 기자회견 자료
07. 8·3조치 집행실적
08. 4·3조치 추진현황
09. 8·3조치 폐지문제
10. 8·3긴급명령 폐지 법률안 확정에 따른 당부조치 보고
11. 금융 정상화 방안(제1부 시은 운영 정상화)
12. 금융 정상화 방안(종합건의 및 제3부 특수은행 운영 정상화 제6차)

II. 금융시장의 안정과 활성화

13. 금융산업의 개발 방향
14.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금융부문 계획(안)
15. 거액 어음부도에 따른 문제와 대책
16. 제2금융권 활성화 및 은행업무의 다양화
17. 유가증권 집중 예탁제도 운용의 효율화 방안
18. 유가증권거래의 실명화 방안
19. 보험산업 장기발전 방향(안)
20. 보험산업의 근대화 방안 수립

III. 금융시장의 자율·개방

21.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Chapter II

금융개혁

- 22.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안
- 23.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
- 24.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 25. 단기금융시장 발전방안
- 26.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 27.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보고
- 28. 외환제도 개혁계획
- 29. 저축여건의 변화와 대책(장기저축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 30. 최근의 저축동향과 금융저축 증대방안

IV. 금리자유화

- 31. 금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대책
- 32.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의 추진을 위한 지시
- 33. 1단계 금리자유화
- 34. 3단계 금리자유화 및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 방안
- 35. 제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방안

V. 금융실명제

- 36. 경제의 안정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
- 37. 금융실명제(1993-3)
- 38.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명령의 배경과 주요 내용
- 39.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발표
- 40.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 41.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1(2-1)

VI. IMF 경제위기와 금융개혁

- 42.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안)
- 43.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

금융개혁 개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자금 중개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채, 개발정책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금융시장으로서 민간의 저축과 투자의 중개기능을 담당한 것은 제도 밖의 금융, 비공식 금융부문, 이른바 ‘사금융(私金融)’, 사채(私債) 시장이었다.¹⁾ 비제도권 금융부문은 기민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제도금융을 보완하였지만, 다른 한편 생산의 성과를 고리대자본으로 누출시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위기를 초래하였다.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금융사가 고가 발생하고,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면서 금융개혁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이중적 금융제도는 구조적 특질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수차례의 금융개혁은 금융제도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며, 위험을 분산시켜 생산 및 물가의 안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금융개혁 기록물은 통화개혁과 2차례의 금융조치, 그리고 민영화, 자유화의 방향 아래에서 추진된 금융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사채동결조치’(8·3조치, 1972년)와 ‘금융실명제’(1993년)의 두 조치는 개혁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단행될 만큼 시급하였고, 긴급한 만큼 단호한 정책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은 예고된 일정이 계속 유예되는 가운데,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개혁의 수준과 정도가 조정되었으며,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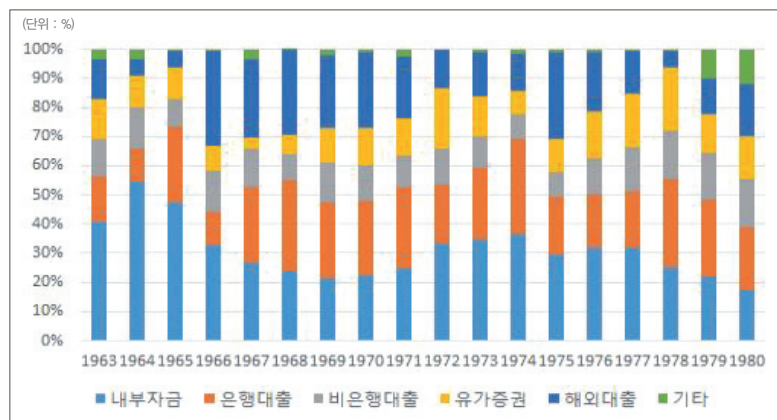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1970년대까지의 개혁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자율·개방화를 위한 정책적 지향,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배경과 그 후속조치 및 평가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D. C. 콜, 박영철, 『한국의 금융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5, pp. 137~142.

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1972년 8월 3일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8·3조치’)은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채의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단행되었다. 1·2차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연평균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961년 9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71년에 253달러로 증대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도·압축성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재정, 금융, 차관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능하였다.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에도 재정 투융자를 통한 고정자본 형성과 특정 산업에 대한 투융자, 차관도입에 대한 지불보증 등의 중점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시세보다 과소평가된 환율, 해외물가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는 국내물가,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은 정책금융의 금리, 그리고 해외차관의 우선 배정은 사실상 특혜였다.

특혜 속에 안주한 민간기업 중에는 자금동원능력이나 자립적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외 환경의 변화에 타격을 받아 부실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었다. 자기자본이 취약한 개별 기업은 단기 운영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리의 차입금을 사채시장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사채금리는 연리 50%에 육박하였다. 폭발적인 자금수요와 제도권 단기금융시장의 미성숙을 틈탄 사채의 성행은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생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림 1】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1963~1980)²⁾

2) D. C. 콜, 박영철, 위의 책, 1985, pp. 46~48.

【표 1】 법인의 자금조달방식(1963~1980)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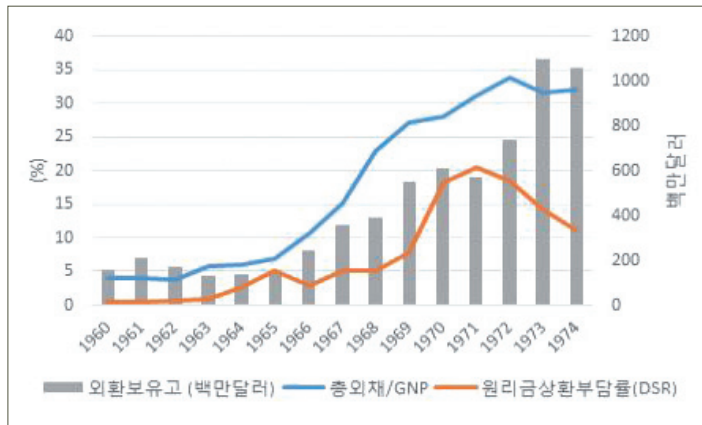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내부자금	242	271	397	489	638	897	1,079	1,261	1,619	2,559	4,312	6,991	7,928	9,841	12,550	15,142	19,343	17,895
은행 대출	92	56	214	164	636	1,156	1,306	1,423	1,828	1,562	3,074	6,255	5,236	5,540	7,572	18,314	23,233	23,198
비은행 대출	75	71	79	208	317	333	678	691	697	940	1,358	1,594	2,349	3,762	6,045	9,883	13,774	17,093
유가증권	81	54	92	125	92	235	595	703	856	1,578	1,721	1,489	2,955	4,984	7,199	13,096	11,887	15,234
해외 대출	83	27	47	488	646	1,087	1,241	1,463	1,371	1,028	1,841	2,463	7,933	6,219	5,737	3,585	10,583	18,810
기타	20	18	5	7	82	14	110	61	169		166	296	347	305	256	327	8,901	12,629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경로를 살펴보면(【그림 1】), 【표 1】), 기업의 내부자금 조달액이 1963년 242억원에서 1971년 1,619억원으로 약 6.7배 증가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외부자금(은행, 비은행, 유가증권, 해외 대출, 기타) 조달액은 351억원에서 4,922억원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시작되면서, 은행 대출, 차관 등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비은행 대출은 1970년까지 유가증권을 통한 조달금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그만큼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66~1971년에 제조업 평균 부채율이 113%에서 394%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10%에 근접하였다. 차관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영부실로 은행 관리대상이 되거나, 지급보증을 맡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도 늘어났다. 1969년 당시 차관업체 83개 중에서 37개가 부실기업이었고, 그 중 16개 기업은 경영개선, 합병 등 정리가 불가피하였다. 1971년에는 18%에 달하는 평가절하로 외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외채에 대한 지불보증업무도 중단되자,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1967년 5.2%에서 1971년 20.4%로 급증하였다(【그림 2】 참조).

3) D. C. 콜, 박영철, 위의 책, 1985, pp. 46~48.



【그림 2】 외채의 구성과 상환능력(1960~1974)⁴⁾

부실 차관기업의 신용 저하 때문에 견실하게 운영을 해 온 다른 기업의 해외 신용도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국가의 신용 추락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졌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직전, 강력한 긴급 금융지원책으로 추진된 것이 8·3조치였다.

8·3조치는 연 3% 이내 물가상승률 억제,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전제로, 사채의 조정, 금리인하와 금융의 확대 공급, 조세부담 경감과 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 보유사채를 동년 8월 9일까지 신고하고, 월리 1.35%(연리 16.2%),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의 채권채무관계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사채 부담을 경감시킨다.

둘째, 2,000억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단기성 대출금 중 30%에 해당액을 대환토록 하되, 대환회수금은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통화 증발을 방지한다.

셋째,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에 각각 10억원씩 출연하고, 각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향후 5년간 대출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자금을 설치하고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정하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한다.

4)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21, 1976, p. 264.

요컨대 8·3조치는 사채동결조치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동시에 추진한 강력한 기업 회생, 자금지원책이었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재정지원과 투자유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고정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할증률을 30%에서 40~80%로, 법인세 및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6%에서 10%로 인상하였던 것이다.

사채동결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분할 또는 분산신고 등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특전을 전부 박탈하고, 무신고의 경우 사채권자의 사채 청구권과 사채에 관한 담보권이 소멸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사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였으며, 허위신고 시에는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시행된 결과, 3,203억원의 사채는 월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채무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산업합리화를 위한 685억원의 장기저리자금이 공급되었으며, 일반 대출금리가 20%에서 16.5%로 인하되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약 1,028억원에 달하였다. 이로써 기업은 급박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하였다(【표 2】 참조).

【표 2】 8·3조치의 효과⁵⁾

(단위 : %)

구 분	1971년 추정 ¹⁾	조치 후 ²⁾	개선폭	개선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	20.5	21.6	0.9	43.9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111.3	148	36.7	33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 / 총자본)	190.1	138.1	-42	22.1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 / (자기자본 + 고정부채))	92.8	79.5	-13.3	14.3
총자본 이익률	10.9	25.1	1.39	127.5
자기자본 이익률	5.32	11.6	6.29	118.2

1) Money Flow Data 중에서 자본금 1억 이상 기업의 추정치

2) 금리인하 효과 포함

그러나 긴급조치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었다. 사금융시장의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단기운영자금이 고갈되었다. 사채시장이 제

5) 재무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DA1042489), 1972, p. 30.

도금융권을 보완하면서 기업의 단기운영자금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었다. 국제적으로는 1973년 석유 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자금 압박으로 다시 도산 위기가 닥쳐왔다. 사금융의 이자율은 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업조차 1년간 신규 투자를 확대한 이후, 이자율이 더욱 높아진 사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경영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다. 나아가 정부가 부채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의식, 타성을 고질화시켜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1972년 1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473%로, 제조업이 평균 313%를 상회하였고, 높은 부채비율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고, 위기 정보장치로서의 기능마비가 우려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8·3조치는 긴급수혈을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 중요한 개혁이었다. 이를 통하여 비대화된 사금융시장의 규모와 실체가 파악되었고, 제2금융권 육성을 비롯한 사금융 양성화와 자본시장 육성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전략 등 개혁의 기본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오일쇼크를 넘어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정부의 추진력은 8·3조치라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방향제시와 실행의지가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8·3조치는 향후 경제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서막을 연 획기적 개혁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규제에서 자율과 개방으로의 개혁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의 방향이 추진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개혁은 규제완화와 금융시장 기능 회복을 초점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금융부문 계획(안)> (BA0143176)은 금융개혁의 방향을 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자율성 제고와 금융시장 정상화로 설정하였다. 1980년 12월에 추진된 <일반은행 경영자율화 방안>은 규제완화 조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은행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7개의 은행이 민영화되고 2개의 시중은행과 12개의 투자금융회사, 58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대외적으로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어 지자,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여건의 미비로 지연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1988년의 ‘금리자유화 계획’과 ‘자본시장 국제화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은 선진적인 계획이었지만, 물가 불안 등의 문제로 주춤하다가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융자유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금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금리자유화가 실적배당상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3】 1980년대 초·중반의 금리자유화 추이⁶⁾

연도별	금리자유화 내용
1981	시장 실세금리 조건의 CP 취급 허용
1984	은행 대출금리의 밴드제 도입 및 밴드 폭 확대
	Call 금리의 자유화
	무보증 회사채 발행금리 자유화
	CD제도 도입
1985	은행에 자유저축예금 도입
	CMA 및 가계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최우량기업(A급) 발행 CP 매입금리 상한 철폐
1986	회사채, 금융채 및 CD 발행금리 자유화
1987	BMF, 기업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1988	금리자유화 본격 추진
	여신금리 : 1·2 금융권 모든 대출금리
	수신금리 : 2년 이상 장기 수신금리와 단기·거액 수신금리 및 실적배당상품 금리
	채권 발행금리 :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금리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1990년대로 들어서자 수출신장률은 둔화되고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압력은 가중되었다.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대비하여 금리자유화와 동시에 금융산업의 개편이 추진되었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실물경제의 활성화였다. 은행의 CD 발행금리, 보증부 회사채의 발행금리, 개발기관의 금융

6) 재무부, 〈1단계 금리자유화 시행방안 송부〉(DA0130408), 1991, p. 137.

채 발행금리의 자율화 방침이 공표되었지만,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1988년 재무부의 금리자유화 조치는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및 일부 수신금리, 실적배당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계획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1단계(1991년)에는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채),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등 단기상품, 당좌대월(當座貸越) 등 단기여신, 3년 이상의 예금, 2년 이상의 회사채 등의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가격기능의 회복,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규제 완화 등을 표방하면서 2단계, 3단계(1994년), 4단계(1997년 이후)로 여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한편, 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1993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1995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1996년)이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개방 준비가 시급하였다. 1992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허용되었고, 1996년에는 국내 개인 및 일반법인 등 일반 투자자에 대한 해외증권투자 한도가 폐지되고 투자대상도 확대되었다. 1993년에는 3차례에 걸쳐 「외국환관리 규정」이 개정되었고, 외국환등록의무제도가 폐지되어 1996년 12월에는 전반적인 개방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개방화가 가속화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이후 금융개혁의 방향은 대외개방의 압력으로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개혁의 방향은 자율·개방으로 설정되었으나, 자유화와 개방의 정도는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실물경기의 여건에 따라 일정과 보폭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1980년대 말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보호와 규제에서 자유와 개방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자율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였다.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1960년대부터 저축장려 명분 하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명, 차명거래의 허용이 부정

부패로 축적한 자금의 도피처가 되고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자, 1980년대 부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실명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 (1982년 5월, 어음사기사건)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방침’(소위 ‘7·3조치’)과 1982년 12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86년 1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로 의무적 시행의 시기를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보류를 명시한 것이었다. 실명 거래 비율은 60%에 불과했고, 실명화를 위해서는 전체 금융소득을 파악해야만 했지만 당시의 행정력으로는 시행이 어려웠다. 금융소득의 전산입력과 실명으로 소득을 합산하려면 엄청난 시행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했고, 정책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당시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실명제가 실제로 실시되면, 해외로의 자금유출, 실물투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2차 석유위기 이후 경기는 침체되었고,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로의 자금이탈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추진시기를 보류한 상태에서 1988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닥치자 모든 정당의 후보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약속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새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경제의 안정 성장과 선진화합 경제추진대책> (BA0889015)에 포함시켜 1991년 1월 전면 실시를 예고하였다.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이 발족되었으며, 실무적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의 경기악화로 또다시 유보되었다. 이후 2차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금융실명제 공약이 발표되었지만, 금융시장의 동요와 경기불안을 이유로 거듭 연기되었다.

하지만 실시 직전에 2차레나 보류되었던 경험은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10년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실명제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실명거래가 확산되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이거나 실명제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도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예컨대 1982년 법률 제정 이후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강화와 실명거래만 가능한 세금우대저축, 금리우대저축 등의 보급으로 실명으로만 거래 가능한 금융자산의 비중이 잔고수준 금융자산의 45%에 이르렀다.

또한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의 사용이 확대되고, 대체지불수단이 개발됨으로써 실명화율은 1992년 말 계좌기준으로 약 98.6%에 이르렀다.⁷⁾

여건이 호전되자,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1993년 6월까지 실명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금융실명제(1993-3)〉(BA0889058))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경제의 안정이 위협받아 왔기에”, “고심한 끝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혔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실시할 경우, 논의기간 중에 음성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다시 보류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긴급명령에 의한 실시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실명 사용의 의무화가 핵심이다. 예금, 적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이자 지급, 증권 매매 등 금융기관 이용 시 반드시 실명(實名;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 확인증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성명)으로만 거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성공 여부는 금융자산이 얼마나 실명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각종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강력한 징계와 유인책이 병행되었다. 실명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출에 제한을 두었으며, 실명으로 전환하면 자금출처의 조사를 면제하고 만일 자금이 위법사항이 있어도 위법에 대한 법률 적용을 1년간 면제하여 벌금 액수를 감하거나 면제하는 강온책이 병행되었다. 한편,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금융거래정보의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비밀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책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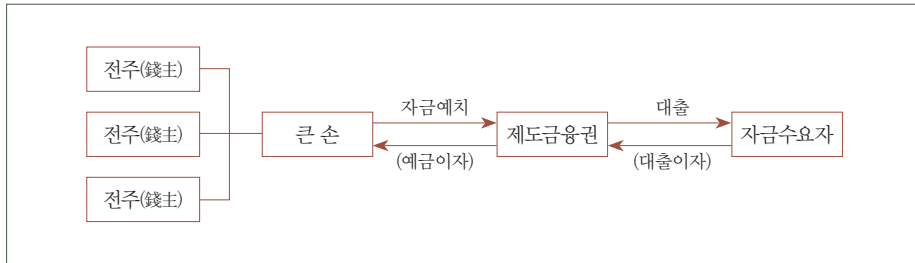
금융실명제는 실시 1년 만에 실명전환율이 98%에 이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형식상 실명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실명거래가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실시에 따른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 변수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으며, 금융시장도 일시적인 기복은 있었으나 곧바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중요한 정책목표였던 사채시장 양성화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7)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백서〉〉(C11M06488), 1994, p. 14.

못하였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직후 사채시장의 거래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사채 시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망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채시장에서의 자금거래 중에서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가명, 차명형태를 이용하여 제도금융권에 유입된 자기에 한하였고, 그 외 다양한 제도 밖의 금융거래는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은 중간단계의 사채업자를 거쳐 집중되고 배분되고 있었으며, 소위 큰손이라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채업자는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표 4】 사채자금의 조성 및 대출 흐름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금의 유통경로가 명확해지고 가명의 자금조성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실시되기까지 금융거래 명세 통보제(1995년)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정착될 수 있었다.

8) 재무부, 위의 책, 1994, p. 112.

01

긴급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에 관한 건

관리번호 : BG0000296

쪽 수 : 49

생산년도 : 1962

생산기관 : 재무부

경제개발계획의 서막을 연 것은 긴급통화조치였다.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었고, 통화체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62년의 통화개혁은 현재의 통화체제를 확정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서 유례가 없는 안정적 통화질서가 구축되는 역사적 계기였다. 이 기록물은 1962년 통화개혁이 공표된 직후 재무부가 심의를 요청한 대책에 대한 의결안, 실무자회의의 결과보고서, 그리고 긴급융자계획의 3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통화개혁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과 초기대응,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통화개혁(currency reform)이란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표로 기존의 통화를 새로운 통화로 대체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과 1962년의 2차례에 걸친 통화개혁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체제가 구축되었다. 빈번한 통화개혁을 거치고도 여전히 불안한 통화질서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개도국과 비교해 보면, 이후 한 차례의 통화개혁도 없었다는 것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미있는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3년에 단행된 1차 통화개혁은 한국전쟁기간에 발행된 통화의 남발과 일제시대부터 유통되어 오던 조선은행권, 적성통화, 미군의 군표 등 혼재된 화폐를 정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화폐의 명칭은 圓(원)에서 圀(환)으로, 100원을 1환으로 1/100 절하하고, 한국은행권이 남한의 공식적인 법화로 독점적 지위가 확정되었다.

1962년의 통화개혁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은행법」 개정을 비롯한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단행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실시되었다. 통화개혁의 목표는 부정축재 및 부패세력이 축적한 음성자금을 찾아내어 장기저축으로 전환시키고, 급증한 통화량의 투기자금화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장기저축으로 유도하고 경제개발계획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1962년 6월 10일,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통한 긴급명령으로 발표된 통화개혁으로 10圓(환)을 1원으로 호칭의 변경과 가치절하(디노미네이션)가 동시에 단행되었다. 동시에 금융조치도 단행되었다. 공적 부문의 예입분은 2차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그 외에는 심사에 의하여 자유계정으로의 전환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고에 귀속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6월 17일까지 1,873억환(1,582억환 현금, 291억환 수표 등 지급수단)이 예입되었는데, 화폐발행액 전액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조치 대상으로는 전환대상 예금은 534억원이었고, 그 중 18.4%가 봉쇄계정으로 동결되었다.

긴급통화와 금융조치는 단행 직후 극심한 신용의 경색과 실물경기의 침체를 감당해야만 했고 일시적인 물가안정의 효과 외에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극심하였으나, 향후 수출주도의 성장전략 하에서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체제를 정비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획득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긴급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에 관한 건〉은 재무부의 의결안으로서, 통화개혁조치에 따른 시장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다루고 있다. 군사정부가 단행한 것이어서 신속하게 추진되었지만,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융자를 포함한 대책이 제안되었다.

의결안은 3가지 방향의 단기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상업어음 한도제를 철폐하고 상업어음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통화개혁 직후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유통경제의 원활을 기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업어음 실링제(ceiling)를 철폐하고 상업어음을 가장한 유통어음의 발행자와 상업어음의 인수자로서 부도케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재정자금의 방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임지급을 앞당기며 재정자금의 대하금을 조속히 융자하며, 재정융자금 중 동결된 것은 전액융자금을 조속히 방출키로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봉쇄예금을 건질로 한 긴급융자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긴급융자계획은 융자한도와 협조처가 정리된 별첨자료로 정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융자계획은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0억 8,300만원에 달하였다. 7개 항목은 ① 대한적십자사 및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구호단체자금, ② 재정자금대출금 중 관리구좌예치금, ③ 농협의 금융자금관리구좌로서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④ 리동농업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토지개량조합, 축협, 양축협회의 예금, ⑤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망용원사(화학섬유) 도입불화(KFX), 매입대전 결제금액, ⑥ 상공부 장관이 승인하는 예금(광업, 무역 및 상업, 중앙도매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 ⑦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계획은 리동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농민에 대한 지원으로, 약 3억 5천만원에 달하였다.

【표 5】 1962년 긴급금융조치의 예금자별 금융조치 내역(1962. 6. 23)

(단위 : 천원, %)

구 분		예금잔액(6.17)	전환대상 예금(6.23)	봉쇄계정	봉쇄율
금융기관		9,923,322	9,934,682	1	0
국가, 지방단체		4,496,288	4,505,622	12,974	0.3
지정법인		3,517,205	3,454,015	1,260	0
특수인		3,383,926	3,385,246	261	0
일반인	법인단체	7,835,789	7,298,220	4,445,664	60.9
	자연인	25,116,184	24,823,461	5,346,168	21.5
	소계	32,951,974	32,121,681	9,791,831	30.5
합계		54,272,714	53,401,245	9,806,326	18.4

* 자료 : 한국은행, 「긴급통화조치 종합보고서」, 『통계』, 1962, 32~33쪽 및 42~43쪽.

** 출처 : 배영목,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연구」, 『경제학연구』, 58집 1호, 2010, 123쪽.

1. 銀行券發行高		
1962. 6. 9 現在		184億圓
6. 20 "		161 "
2. 10個都市對額計定推計		
對額計定	9,277萬圓	
自由計定	21,279 "	
(轉 錄)	(8,500)——國庫券	
3. 通貨量推計 (1962. 6. 17 現在)		
計 260億圓		
(參考: 5月31日現在 356億圓)		

【그림 3】긴급통화조치 직전 직후의 주요 현황
(BG0000296, 737쪽)

〈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실무자회의 결과보고서〉는 2급 비밀문서로 취급되다가 주요 내용이 공표됨으로써, 1962년 6월 28일자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로, 재무부 장관이 제안에 앞서 실무진이 사전검토를 한 내용이다. 상업어음제도의 활용, 재정자금 방출의 신속화, 봉쇄예금을 견질로 한 긴급융자의 실시라는 3가지 대책이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6월 21일자로 보고한 자료이다. 경제기획원 부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재무부 차관, 농림부 차관, 상공부 차관, 건설부 차

관, 주미공사,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중소기업은행장, 농업협동조합 업무담당이사 등 실무자가 참석하여 3시간 30분간(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에 걸친 토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무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토의가 마무리되었다(재무부 이재국장 주관 하에 적정통화량 책정 소위원회를, 재무부 기획조정관 주관 하에 상업어음 활용, 재정자금 방출, 긴급융자대책 강구를 위한 소위원회).

02

주식 분산 및 내자동원 방안(안)

관리번호 : BA0138599

쪽 수 : 27

생산년도 : 1965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이 기록물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연구과제 「주식 분산 및 내자동원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보고한 자료이다. 증권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자 증권업계는 정부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항의로 무기한 휴장을 결의하였고,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경제개발계획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박성은 국내의 모든 자본을 최대한 동원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집중되었고, 그 고민이 문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기록물에서는 주식 분산의 목적을 2가지로 밝히고 있다. 하나는 기업의 자본구성을 건실화하는 것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독점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정부투자기업, 원조·차관기업,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주식소유제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소유주식을 상여금 지급 시마다 1인당 5,000원 미만은 10%, 1인당 5,000원 이상은 20%, 1인당 10,000원 이상은 30% 해당액을 매수케 하되 이들에게는 2년간에 걸쳐 매수대금의 분납 특혜를 허용하여 정부소유기업 주식 매출금융 형식에 의한 주식매수증서를 발행하는 형식이었다. 분매가격은 분매일 이전 월 1개월간의 평균 실물 주가의 3분의 2로 하고, 주식매수증서의 양도를 제한하여 기간 내에 양도하는 자에게는 매수 당시의 가격(1/3을 공제하지 않은 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대금을 일시에 납부한 자에게 한하도록 하며 동일 기업체의 주식에 대해서는 1인당 100주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1965년 말 정부투자기업체 임직원의 상여 및 퇴직금은 21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기록물에서는 내자동원을 위하여 7가지 기본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인플레이 수속과 통화가치의 안정, 소비규제, 금리의 적정화, 은행기구의 합리적 운영,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유동질서의 안정화와 가격기구의 합리화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정부입찰계약금 지출 추곡 및 영업초 구매자금 방출 시 일정비율을 정기적금증서로 지불하고, 보험 및 신탁의 발전의 확대를 위한 방안(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의 제한, 국민생명보험의 효율적 운용, 담보부회사채 신탁의 실시), 회사채의 발행(할인담보부, 금융기관보증, 산업은행 보증 회사채), 연체 방지 및 연체대출의 강력 회수(페널티 금리 20% 이상 적용), 농업부문에서의 자본 형성 촉진(농협의 자기자본 조성 촉진, 대충자금 융자금리 인상과 그 차액의 간접 출자, 조합원으로 하여금 현금 또는 현물출자 장려), 사금융의 양성화(「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대금집단속법의 조속 제정, 신용조합 및 신용금고제도의 실시), 건국국채의 시중소화(국채판매대금을 특정사업과 직결 등),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증대 및 효율화(동업 단체별 조합원의 저축액 재조정, 학생저축의 적극 장려, 지역별 저축조합의 강화, 국민저축조합 저축에 예치한 금액은 개인소득세에서 면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은 대단히 적극적이다. 우선 주식공급량의 확대를 위해서 기업의 공개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융자대상 기업체의 부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인수케 하고, 금융기관의 융자면에서 공개법인을 우대하며, 기업재무의 완전공개를 입법화하고 공시기업의 상여금 또는 퇴직금 지급 등 주식으로 지급토록 하며 정부소유주식을 매각하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물에서는 건의사항으로 재무부 기업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자동원 촉진위원회를 둘 것과 1965년 중에는 주로 주식 분산에 의한 내자동원에 집중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3

1966년도 저축증강계획

관리번호 : BA0084463

쪽 수 : 41

생산년도 : 1966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차년도인 1966년에 당면한 경제개발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렬 재무부 장관이 제출하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상정된 저축증강계획서이다.

1966년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부족이 매우 절박한 사안이었다. 이 기록물에서는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박감 속에서 전방위적인 운동을 벌이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내자의 근간인 저축을 최대한 증강하기 위하여 1965년 4월 2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966년도 저축목표액 83억원을 200억 원으로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저축의식 고양과 유흥자금 흡수를 위한 저축분위기 조성 및 신종 저축방안 창안 실시 등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저축목표액은 은행, 금전신탁, 체신, 보험 등에 각각 할당되었다. 1965년에 대비 목표잔고를 정하였는데, 은행(389억원⇨527억원), 금전신탁(63억⇨87억), 체신저축(20억⇨32억), 생명보험(35억⇨55억), 손해보험(9억⇨15억)으로 총 518억원에서 718억원으로 200억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하여 복금부 정기에금을 확대 실시하였다. 복금부 정기에금이란 채권형식으로 발행된 무기명 정기에금으로, 예금자들을 추첨하여 당첨금을 제공하는 사행심을 이용한 저축자금 흡수방식이었다. 복금부 정기에금(6개월 만기)을 매월 모집하여 연간 15억원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별 목표할당액과 예금경쟁제를 추진하였으며, 우수기관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시상 연 2회 1등 30%, 2등 20%, 3등 10% 목표액 159억원).

또한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계장급 이상의 정부관리 기업체직원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토록하고, 봉급의 10% 이상을 적금으로 가입하게 하는 강제저축을 실시하였는데, 이 또한 목표액이 22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공사 및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지불액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토록 한다든가, 적금이나 상호부금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 모집인력을 투입하는 등 저축 장려책을 실시하였다. 다소 강압적인 조치로서는 농협에 새농민예금 실물장려예금 공제사업 등 신종예금을 만들어서 농산품의 거래와 연결한다든지, 각종 인허가, 면허를 조건으로 저축을 의무화 하는 등 저축을 강제하였다. 전화가설, 해외여권교부, 차량검사, 건축허가, 심지어 영화상영과 모든 인허가 시에도 시에도 저축이 강제되었다. 학교별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절약과 저축의 습관을 고양시켰으며, 여중 이상의 가사시간에 가계부 작성을 계도하고, 교과서에 가계부에 대한 교재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안)

관리번호 : BA0084681

쪽 수 : 12

생산년도 : 1972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8·3조치 시행 하루 전, 1972년 8월 2일에 재무부 장관이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데 따른 용어정리, 범위 등을 ‘재무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이다.

기록물은 대환의 대상이 되는 기준 및 대출범위와 신규 대출금의 조건, 특별금융채권의 상환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환(貸換)대상 기준 대출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차관자금, 3개월 이상의 연체자 또는 조세 체납자의 경우이며, 상환(대환)금액은 일반상환의 경우 30%, 특별상환의 경우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신규 대출금은 금융자금 8%, 신탁자금 12.5%의 이자율로,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목적, 정의, 기준 대출금 범위, 상환금액(제4조), 신규 대출의 신청(제5조), 신규 대출금의 상환방법과 기한(제6조), 특별금융채권의 발행방법(제7조), 채권의 발행조건(제8조) 채권의 발행승인(제9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자금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예수금, 차입금 및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급한 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를 통해 기업 대출금에 한하여 사채동결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환금액의 항목을 일반상환, 특별상환으로 구분하고 그 중 특별상환은 산업합리화 관련 기업의 자금으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특별상환에 의한 신규 대출의 경우 심의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금융의 혜택이 집중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금 대출금의 상환시에는 연 8%, 신탁자금 대출금 상환시에는 연 12.5%, 채권의 발행조건 이자율을 연 5.5%로 정하고 있다.

【표 6】 기준 대출금표

금융기관	대출금	비고
금융기관 공통	일반자금 적금 대출금 중장기 분할상환 대출금 기계공업육성자금 1972년 6월 30일 현재 이자율이 연 12% 초과분	금융자금 대출금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 할부 대출금 중소기업협동조합자금 중 1972년 6월 30일 현재 이자율이 연 12% 초과분 금융시설자금	
국민은행	중소기업자금	
한국주택은행	기자재 운영 및 시설자금 건설업자 주택자금 대지 조성자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기업자금 농기업단체에 대한 대출금 수산자금 조합육성자금 중 특수조합자금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제조자금 금융시설자금 수산물 양식자금	
한국산업은행	산업시설자금 산업운영자금과 외화수탁금·외화예수금 및 외국 금융기관 차관자금에 의한 대출금 중 1972. 6. 30 현재 이자율이 연 12% 초과분	신탁자금 대출금
한국신탁은행	유가증권 담보 대출금 동산 담보 대출금 부동산 담보 대출금 보증 대출금 어음 대출금	

* 다만 이상에 제기하는 대출금 중 예금 또는 금전신탁을 담보로 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함

** 출처 : BA0084681, 597~599쪽.

8·3조치 효과

관리번호 : DA1042486

쪽 수 : 218

생산년도 : 1972

생산기관 : 재무부, 국세청

이 기록물은 197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작성된 8·3조치에 대한 8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사채에 관한 보고〉(국세청)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무부에서 작성하였다. 명령공포 직후 금융권, 기업의 반응을 재무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명령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이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향후 중화학공업화와 산업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위기의식과 실무적 대응 방향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미시적인 기록(개별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성과와 중소기업 긴급자금 방출실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8·3조치 추진현황 보고서〉는 8·3조치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9월 7일)에 재무부가 작성한 기록물이다. 신고현황, 기업에 미치는 효과, 금융 및 자본시장 동향, 보완대책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30쪽의 보고서로, 상세한 통계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 동향과 보완대책은 대단히 분석적이다. 구체적인 상황정리와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어음의 신용 보완책이 제시되어 있어 당시 금융시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고현황을 보면,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신고기간 중에 사채의 채권자 신고는 210,906건 3,571억원, 채무자 신고는 40,677건 3,456억원이었다. 8월 11일까지 소액 사채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조정사채서 교부 및 중재가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정사채 증서가 교부된 것은 17,792건 2,542억원으로 채무자 신고액의 76%에 달하였으며, 중재신청은 8,722건 480억원으로 14.9%였다.

신고한 채무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31.8%가 판매업, 17.2%가 서비스업, 운송보관업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료, 방직, 화학, 금속, 기계 등 제조업의 기업수

는 25.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금액 부분에서는 제조업이 56.4%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방직업은 1.7%인 679개의 방직회사가 채무 신고액의 10%인 354억원을 신고하고 있다.

사채규모를 보면, 300만원 이상의 사채가 68%였으며, 30~300만원의 사채가 29.1%, 30만원 미만은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30~300만원 규모에 55.7%인 11만 5,288명이 집중되어 있었고, 30만원 미만의 소액 사채권자는 73,957명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하였다. 300만원 미만의 사채업자는 90.8%에 달하였지만, 금액 부분에서 39%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지 않았다.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채무기업은 전체 40,677업체였고, 그 중 100만원 미만의 채무기업이 전체의 50.4%였으며, 90% 이상에 해당하는 3만 6천개 업체가 1,000만원 미만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금액 부분에서는 전체 사채의 16%에 불과했다. 반면, 1,000만원 이상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4,231개 업체로 10.4%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체 사채의 83.9%에 해당하는 2,903억원이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1억원 이상의 사채가 547개 업체에 집중되었고, 금액은 전체 사채의 52.8%인 1,829억원에 달하였다.

【표 7】 채무기업의 업종별 신고상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기업체수		금액	
		구성비		구성비
1. 광공업	677	1.7	8,774	2.5
2. 제조업	10,266	25.2	195,001	56.4
식료 및 음료품	963	2.4	16,489	4.8
방직	679	1.7	35,439	10.3
화학	588	1.4	11,606	3.3
금속제품	861	2.1	13,683	3.9
기계	916	2.3	22,032	6.4
3. 건설업	2,046	5	26,155	7.6
4. 판매업	12,934	31.8	42,694	12.3
5. 부동산업	722	1.8	11,949	3.5
6. 운송보관업	2,658	6.5	17,486	5
7. 서비스업	6,963	17.2	27,873	8.1
8. 농림축산업	1,878	4.6	8,901	2.6
9. 기타	2,533	6.2	6,780	2
합계	40,677	100	345,613	100

* 출처 : DA1042486, 5쪽.

【표 8】 사채권자의 금액별 신고상황

(단위 : 백만원)

금액별	사채권자수		금액	
		구성비		구성비
30만원 미만	73,957	35.1	10,366	2.9
30 ~ 300만원 미만	115,288	55.7	93,888	29.1
300 ~ 1,000만원 미만	16,986	8	81,135	22.8
1,000만원 ~ 1억원 미만	4,477	2.1	97,156	27.2
1억원 이상	198	0.1	64,548	18
소계	21,660	10.2	242,839	68
합계	210,906	100	357,093	100

* 출처 : DA1042486, 6쪽.

【표 9】 채무기업의 금액별 신고상황

(단위 : 백만원)

금액별	기업체수		금액	
		구성비		구성비
100만원 미만	20,515	50.4	7,634	2.2
100 ~ 1,000만원 미만	15,931	39.2	47,618	13.9
1,000만원 ~ 1억원 미만	3,684	9.1	107,386	31.1
1억원 이상	547	1.3	182,975	52.8
합계	40,677	100	345,613	100

* 출처 : DA1042486, 6쪽.

사채의 조정과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 금융조치가 단행되었다. 금융기관이 2,000억원의 한국은행 인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업에 대한 단기대출금 잔액의 30% 해당액을 연리 8%, 3년 거치 5년 상환의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대환하였는데, 8월 31일까지 신청된 금액이 1,470억원이었다. 그리고 9월 2일까지 생필품 또는 기자재 생산업종으로 제품가격의 안정에 불가결한 기업, 외화획득 또는 고용효과가 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산업은행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의회에서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10】 일반 대환(貸換) 신청상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72.6.30		신청금액			비율	
	기준대출금						
	추정(A)	신청(B)	1차	추가	계(C)	B/A	C/B
시중은행	2,781	1,928	587	233	820	69.3	42.5
특수은행	1,883	1,461	446	116	562	77.6	38.5
농수산협동조합	243	99	30	6	36	40.7	36.4
소계	4,907	3,489	1,063	355	1,418	72	40.6
지방은행	271	134	34	18	52	49.4	38.8
합계	5,178	3,623	1,097	373	1,470	70	40.6

* 출처 : DA1042486, 8쪽.

긴급명령은 중소기업금융을 비롯한 각종 금융 상의 신용보증제도를 확충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출연하고,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이율 0.5%를 초과하지 않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한편, 이같이 조성된 기금의 10배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 기록물에서는 5년간 약 290억원의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년간 보증기금 8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예납부로 신용을 취급토록 하는 안도 제시되어 있다.

【표 11】 기금조성 전망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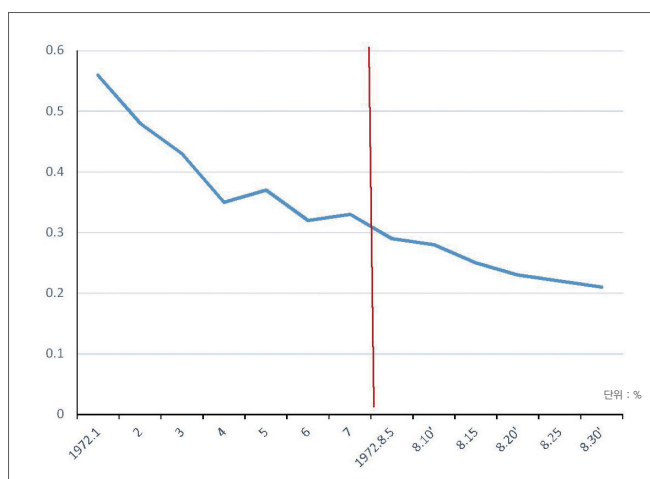
구 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계
보증기금	36	47	57	68	82	290
보증대출한도	360	830	1,400	2,080	2,900	

* 출처 : DA1042486, 9쪽.

1973년까지 향후 1년간 보증기금을 80억원 조성하는 계획을 은행별로 할당하였으며, 당해년도 12월까지 중소 및 영세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조성 이전에 기업은행,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예약부로 신용을 취급하도록 조치했던 것이 8월 17일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 금리인하,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한 조세특례가 후속조치로 단행되

었다. 예컨대 합리화 지정산업 및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율(긴급명령 제60조), 투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산 기자재의 범위(긴급명령 제61조 제4항), 기술개발 준비금(긴급명령 제63조)이 단행되었다.

또한 이 기록물은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생산비 절감, 기업의 재무구성 건전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고, 제조업 중에서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을 15개(낙농, 모방, 화섬, 가구, 종이, 기타 화학, 도자기 점토제품, 제1차 제강, 제1차 비철, 날붙이연장, 특수 산업기기,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자동차부속, 악기)로 예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연간 1,028억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리인하(연 19% $\Rightarrow$ 15.5%, 380억원) 대환(貸換)(연 15.5% $\Rightarrow$ 8%, 165억) 사채조정(월리 3% $\Rightarrow$ 1.35%, 483억)의 효과를 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성 건전화를 위하여 차입금 기한을 장기화하여 단기 차입의 비중을 줄이고(45.5% $\Rightarrow$ 22.6%로), 사채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익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동차 10%, 도자기 점토 7.2%, 악기 6.2%, 모방 5.9%, 산업용 전기기기 5.6%를 비롯한 15개의 산업에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4】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추이(1972년 1월~8월 30일)
(DA1042486, 19쪽)

실제로 8·3조치 전후 2개월간의(1972.6.30~8.31) 금융시장 동태분석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대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어음부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본시장에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양측에서 모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났다.

다. 당시까지 발행시장이 거의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72년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은 34건 113억 4천만원이었다(주식은 6건, 31억 4천만원 발행, 그 중 상업은행 주식은 22억 6천만원, 회사채는 28건 82억원). 그런데 8·3

조치가 단행되자, 대한유리 주식은 1억 2,500만원 발행되었으며, 3,520건 7억 3,800만원의 청약이 이루어져 청약률이 591%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양화학, 새한상사, 한국스레트의 회사채는 6억 5천만원 발행되었는데, 모두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는 효과를 상당히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은행금융, 화폐시장, 자본시장에서 각각 보완책이 제시되었다. 은행의 어음할인 취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어음소지인의 신용상태를 묻지 않고 우대 적격업체 발행어음은 무조건 신용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할인 취급기간도 대폭 단축하여 지점장 전결은 2개월 이내, 본점 승인은 4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나아가 한국은행의 어음 재할인 요건을 대폭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의 확대(긴급자금 200억원을 8월 7일부터 즉각 방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중소기업 대출 비중 31.8%로 증가)가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폐시장의 재정비는 단기 「금융업법」 및 「은행령」 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금융회사의 업무를 확대하여 어음매입, 어음매출, 어음보유를 담당하고, 단자회사를 연내에 설치하며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 회사채 발행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조정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증권인수체제의 강화와 금융 폭을 확대하여 증권발행을 촉진시키는 등 발행시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증권 공급 증대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 보유증권의 시장출회 촉진을 보완책으로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8·3조치 후의 금융동향〉과 〈8·3조치 종합추진현황〉의 두 개의 보고서는 각각 8·3조치 실시 후 각각 1개월, 4개월의 동향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통화량과 예금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저축성 예금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통화량은 4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38.4%가, 발행고는 25.3%가 증가하였고, 예금은 8~10월에 67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저축성예금은 8~10월에 362억원이, 요구불예금은 288억원이, 정기예금은 135억원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의 자금사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전국 550개 기업에 대한 금융실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며, 금융 체질개선을 위한 주요 조치의 실적이 기

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개시장 촉진책의 모색'이라는 도표는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공개시장촉진법」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산업합리화자금'이라는 별도의 장에는 기본방향, 산업합리화 산업의 선정기준, 대상산업, 정부지원과 기대효과 등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사업의 기획서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 동향(1972. 8~10)

1972년 11월 7일에 작성된 금융 및 자본시장 동향에 대한 것으로, 종합추진현황보고서와 대동소이하나 중소기업 긴급자금 방출실적이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다. 중소기업 긴급자금 방출실적과 한국은행이 550개 기업에 대하여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기업이 79%, 매출채권 회전이 호전되었다는 기업이 58%, 현금 예금잔액이 증가되었다는 기업이 23%, 자금사정이 호전되었다는 기업이 75%로 나타났다. 어음부도율은 1971년 10월에 0.48%이었는데, 1972년에는 0.19%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금융 체질개선을 위하여 10월까지 진행된 주요 조치로는 용자 결정에 있어서 자율적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에 대한 용자비율 소요자금에 대한 용자비율을 철폐하였으며, 용자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용자심사방식을 물적 담보평가에서 기업체 종합평가로 변경하였다.

또한 자동회전대출제를 실시하였는데, 공개법인, 우대 적격업체 및 기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자동대출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은 한도 내 대출에 응할 계약상 의무를 지도록 하며, 기업은 미사용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 0.5% 이내의 설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정자금 및 특수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일단 여신관리 구좌에 예치하고 잔고 및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정기적인 신용 검증과 신용기록(Credit File)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8·3조치 이후 3개월 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액면 초과를 실현하였으며, 채권시장 수익률이 공금리 수준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1972년 8월 2일의 주가지수는 168.1이었고 11월 3일의 주가지수는 239.2였다. 1일 거래약정대금은 2억원에서 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채권 평균 수익률은 17.2%에서 15.9%로 하락하였다. 7건의 주식 32억원과 34건의 회사채 96억원의 공모가 진행되어

기업공개에 위한 자본시장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었다. 기업공개에 위한 정부의 적극적 유인책으로 공개기업에게 세제와 금융상 우대 혜택을 주었지만, 여전히 기업공개는 초보적 상태였다. 당시 공개법인 수는 50개에 지나지 않았고, 가족회사체제의 고수 성향으로 기업공개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 기록물에는 ‘새로운 기업공개 촉진책의 모색’이라는 명칭의 구상이 그려져 있는데,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기업공개 촉진법」의 기초작업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비공개법인 중 공개요건이 갖추어진 기업이 만일 기업공개에 따르는 막대한 우대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공개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상대적 우대제도를 공개하는 법인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조정사채에 관한 보고(1972. 10 현재)

국세청이 작성한 <조정사채에 관한 보고>는 필사본 노트, 메모와 다양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8·3조치 이후의 사채 동향>이라는 메모와 지방별로 기록된 <출자전환 내역서>, <출자전환 대법인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명단에는 법인명, 대표자, 출자전환액과 함께 비고란에 과점, 일반 등의 표기가 있는데, 국세청이 직접 조사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주일간 3만 5천명이 동원되어 사채원금을 확인한 결과, 정상사채는 1,469건 1,136억 74백만원, 음성사채는 14,572건의 1,698억 67백만원으로 총 16,041건 2,835억 4,100만원이었다. 그 내용이 사채원금 확인 집계표가 지역별로 법인, 개인으로 정상, 음성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정상사채, 음성사채 모두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이 43.2%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신고상황을 보면, 서울이 채무기업의 60.4%, 채권업자의 67.2%, 부산이 각각 12.3%, 11.6%로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채무기업의 업종별 금액별 사채 신고상황은 11개의 업종별로 세분되어 있고, 조정사채 교부현황과 필사본인 <출자전환 내역표>는 과점주주분(寡占株主分), 일반사채권자분(一般私債權者分)으로 구분되어 있다. 과점주주는 937업체, 1,779명의 주주 429억원이 출자전환되었고, 일반사채권자는 667기업 3,707주주 333억원이 출자전환 대상이었다. 총 출자전환 액수는 762억 39백만원, 대상기업은 1,604업체로 그

중에서 등기가 완료된 기업은 1,356업체, 663억원이었다. 출자전환 대기업에는 총 50개 기업의 명단과 대표자, 사채신고액과 출자전환액, 그리고 과점기업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50개 기업의 사채신고액은 448억원이며, 그 중 절반인 225억원이 출자로 전환되어 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록물에는 실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8·3조치를 알리기 위한 영문보고(Preliminary Results and Prospects of President's Emergency Decree)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보완조치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8·3조치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8·3조치 실시 이후 가장 일찍 작성된 보고서로,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 금리부담이 9.4%에서 6.1%로 저하되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1.3%에서 4.1%로 상승하며, 종전 적자업종 32개 중 15개 업종은 흑자로 전환되며, 8·3조치는 흑자 업종보다 적자 업종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3조치로 기업의 금리부담률은 1968년의 국내금리 수준을 그리고 일본의 금리부담률(4.6%)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고, 전체 제조업의 금리부담률을 평균 5.1%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흑자업종과 적자업종에 대한 별도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요약한 문서로, 그 중 흥미로운 도식은 자금공급 경로의 재조정 구상 부분이다. 아울러 은행 영역의 확대를 위해 ‘여수신좌수 넓히기 운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당좌수표에 의한 결제방식의 보급을 예시로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범 점포를 설치하고자 점포의 모양도 도식화하고 있다. 즉 지점 간부급이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대부담당자는 객장에서 고객과 상담하며, 예금과 환업무는 대리점이 전결하고 직원은 뒷자리에서 계산만 하며, 조흥은행은 상가 중심지에 기업은행은 공장지대에 국민은행은 주택가에 시범 점포를 설립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용자업무의 현대화를 위해 신용기록(Credit File)을 작성하여 신용대출과 보증에 기록으로 활용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

1973년도 8·3조치 이후 기자회견 자료

관리번호 : DA1042489

쪽 수 : 242

생산년도 : 1972, 1973

생산기관 : 재무부

1973년 1주년 기자회견과 조치 직후 약 3개월간 기자회견 자료와 산업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등을 수록한 12건의 기록물철로, 작성시점이 1972년부터 1973년에 걸쳐 있다. 1주년을 맞이하여 8·3조치의 단기적 성과를 선전하는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는 상당히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을 위한 내부 브리핑, 논의 자료적 성격을 지닌 기록물로, 기업명단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특단적인 긴급조치를 계기로 근본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8·3조치 1주년을 맞이하여-〉

이 기록물은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8·3조치 1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 자료이다. 통화신용정책, 은행금융, 특수금융, 자본 시장 육성, 보험업무 채신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요망사항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다.

첫째, 통화신용정책으로 당초에는 여신 23.9%, 총통화 24.7% 저축성예금 2,500억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높은 경제성장률, 국제적 인플레이 경향, 양곡 수확량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각각 26.2%, 27.2%, 2,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경기회복에 집중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면에서는 양곡 기금, 비료계정 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무역금융을 효율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은행금융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국내

저축을 증대하고 외화획득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즉 농촌 저축을 증강하여 국내저축을 최대한 동원하고, 설비자금 공급기구를 개선하며,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장기 원자재 조달 금융을 지원하며, 연불 수출기금을 확보하고 장기 무역금융을 본격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셋째, 은행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특수금융 육성방향으로는 단기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단기자금 공급(총 1,183억원 : 자본금 79억원씩 15회)을 확대하여 사채시장의 재발을 방지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높여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을 공표하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추진 주도체로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직을 확대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넷째, 자본시장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정착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량 성장기업의 자진 공개 유도, 공모가격 결정의 합리화, 주식 대중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공신력 제고, 공정거래와 주가 안정, 공시제도의 확립에 대한 구체안이 제시되었다. 감독기능 강화 대책으로는 시세 변동에 대한 원인분석기능과 거래소의 감리기능 강화에 두고 있다. 공채시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조건을 탄력화를 도모하고 기관투자자를 개발하며, 투자신탁 및 증권저축제도를 개발하며 종업원 지주제도를 증권저축제도와 연결시켜 제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다.

다섯째, 보험업무의 쇄신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험회사의 체질개선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계약자 보호와 보험인구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서비스 향상, 보험자산의 충실, 부실보험회사의 규제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보험업계의 계약모집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며, 보험자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험자금의 산업자금화, 편중 투융자 지양, 부실자산의 강력한 정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기록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요망사항」이라는 별첨 문서이다. 앞선 5가지 정책방향의 지도방침이 정리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경고문이 첨부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기업금융의 지도방침을 보면, “8·3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기업지원조치는 앞으로는 다시 없을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재무구조를 더욱 개선토록 노력할 것”, “기업인은 사채상환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은행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및 기업공개를 통한 자기금융 확대에 경기 적응력을 배양할 것”, “기업인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재무구조의 양성화, 자금의 사외 유출 지양, 대출금 유용

근절을 통해 생산성 제고,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 경영합리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 등 긴급명령의 권위와 엄중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유신과업이라 명시되어 있는 각 금융기관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즉, 은행은 저축증대와 기업공개를 독려, 증권회사는 내자조달을 통하여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 보험회사는 사회의 공기(公器)이며 선의의 관리자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유신과업 수행에 매진, 특수금융회사는 담보없는 신용대출방식에 의한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채시장의 재발을 방지, 농촌의 신탁, 마을금고의 확대로 자립적인 협동기반을 확립할 것이 강조되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1972. 8. 3)

이 기록물은 총 6장으로 구성된 8·3조치 기자회견문이다. 긴급명령의 취지와 목표, 절차 및 운용방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이 1972년 8월 2일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8월 9일까지 신고하게 하여 월 13.5%(연리 16.2%)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정리토록 하는” 것을 핵심 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조정대상이 되는 사채의 채무자는 기업에 한정하였는데, 이때의 기업을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판매업, 부동산업, 운송보관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요리점 및 오락서비스업과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업감찰을 교부받은 기업 중 보험, 신탁 등 광의의 금융업을 하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제외되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영업감찰을 교부받지 않은 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었다. 영업감찰을 교부받지 아니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행하는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면 조정대상이 되었다. 조정대상이 되는 사채는 원금에 8월 2일 현재까지의 지급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기업 간 신용거래에 따른 외상채무나 선수금이나 보증금의 반환채무, 회사채와 외국차관 등 공인된 방법에 따른 기업채무, 상호신용계나 신용부금의 계약으로 인한 금부채무 등은 제외되었다.

사채 조정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어음교환이 정지되었고, 8월 5일까지 사채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한 어음 등 지급수단 중에서 8월 2일 현재 결제되지 않은 것을 지급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지급은행은 신고된 것에 대해 지급을 금지토록 하였다.

사채 조정은 우선, 모든 사채 관련자(채권, 채무, 중개인)가 신고하고, 채무기업이 채무조정증서와 보고서를 채권자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주일간 진행된 신고절차는 채권자는 금융기관, 세무서에서 사채신고필증을 받도록 하였고, 채무기업은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고하지 않은 사채권자의 채권은 소멸되고, 채무기업은 2배 이상의 벌금, 65% 증여세 부담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였다.

또한 기자회견문은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정착과 연간 200억원의 부담 절하로 인한 경영안정화 효과를 거둘 것을 알리고 있다. 사채 조정과 동시에 단행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조치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고리 차입금 중 약 2,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대환하는 것이었다. 소요 재원은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자금의 조달경로는 발행된 채권으로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에게 유입되고, 기업의 차입금을 상환액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환류되어 자금이 동결되는 경로였다. 대환대상의 대출금은 5,178억원으로, 총 대출금 1조 4,788억원의 35%, 33만 5천건으로 추정되었고, 그 중 금융자금 대출금이 약 4,330억원, 신탁자금 대출금은 848억원에 이르렀다. 기존 대출금의 30% 해당 금액, 회사채 공모기업에 대하여 그 발행금액의 30%를 추가한 금액을 합한 일반대환이 1,571억원,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에 대하여 심의회가 별도 결정한 특별대환이 429억원이었다. 일반대환은 신청을 받았지만, 특별대환은 심의회가 결정하였다. 대환은 금융자금 연 8%, 신탁자금 연 12.5%의 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제시하는 파격적 조건이었다. 특별금융채권으로 발행된 2,000억원의 이자율은 연 5.5%였고,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동결시킨 자금은 연 13.0%, 신탁자금 16.5%의 금리를 적용하였다.

사채동결조치라 불리는 긴급명령이 새마을운동 및 중화학공업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었음은 다양한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기 위해 약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연 1,000분의 10의 확충 기금도 증액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신용 보증기금에 의하여 담보가 미약한 중소기업에 225억원, 농림수산업자에 120억원을 신용대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명령에는 산업합리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합리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집중 지원산업, 기업의 후보군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산업, 수출관광산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500억원을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국자본 도입 등으로 조성하여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출, 출자, 기업이 발행한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 취득, 지정산업 또는 기업재산의 취득에 투입하였고, 조세 부분에서도 특혜를 주었다. 동시에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를 통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우량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농사자금에 대하여는 연 15%에서 연 13%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또한 은행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 1년 기준 2.2%의 예대금리차를 3.5%로 확대시켰으며, 일반대출과 당좌대월 간의 금리차를 3%에서 2%로 축소시켰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금리차를 종전 3%에서 2.5%로 축소하였다. 명령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자금 200억원을 투입하였다.

8.3 긴급조치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효과 분석

이 기록물은 한국산업은행이 1972년 6월~1973년 6월 사이의 재무구조와 영업성과를 다룬 36쪽의 분석자료이다. 목적, 방법, 지표산정공식, 기업재무구조 개선효과 분석의 본문 4장과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은행이 긴급명령의 실무담당기관이었기 때문에 신고기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1972년 6월 30일부터 1973년 6월 30일까지 8·3조치 전후 기업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기업성과를 재무구조 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표산정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자료 작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서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대표기업의 성과지표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합리화과정에서 인수합병되는 경로를 살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표에는 종합경영비율 산정표, 업종별 경영비율표, 규모별 경영비율표, 종합대차대조표 및 종합수익계산서와 분석기업체 명단이 첨부되어 있어서 8·3조치가 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기업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88개의 대기업이다. 총자산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 종업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전체 기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집중 지원이 된 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 피복 및 가죽제조업이 20개,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19개, 음식료업 14개,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14개 등 9개 업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표준산업 분류) 자산규모로는 10억원~50억원 사이에 40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1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이 각각 24개 업체로 분포되어 있다.

분석보고서에서는 8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전 업종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정성 지표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자기자본구성률이 사용되었다. 즉 유동자산을 단기간에 현금화하여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역량, 단기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치를 보면, 유동비율은 102.5%에서 118.4%로, 부채비율은 638.44%에서 417.99%로 감소되어 타인자본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지표는 모든 업종에서 개선되었지만, 유동화율이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은 인쇄출판업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었고, 부채비율은 제재 및 가구제조업, 금속기계 등에서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차입자본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장기자본과 과정자산의 관계비율을 통하여 자본배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고정장기적합률 지표를 보면, 85%에서 74%로 크게 하향하여 장기적 안정성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별로는 자산 10억원 이하의 기업은 지급능력이, 10억~40억원 규모의 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총자본 이익률, 매출규모 이익률, 이자부담률, 금융비용 대비 총비용 비율로 측정한 수익성은 2배 이상 향상되었고, 섬유, 목재, 가죽, 종이제품, 인쇄업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식료품제조업과 1차 금속제조업의 이자부담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분석보고서의 모든 지표는 88개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8·3조치 결과 크게 개선된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12월에 실시된 「기업공개 촉진법」이나 후속조치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실시된 모든 위기관리시스템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지원책

의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 말미에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성 운영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도하여 자기자본 구성도를 높이고 지급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익성 향상 및 재무구조 건실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한 것처럼,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단기적으로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8.3조치 이후 금융 및 자본시장 동향 분석

이 기록물은 1972년 11월 7일 재무부가 제출한 자본시장 동향 분석보고서로, 18쪽의 등사물이다. 금융동향, 기업의 자금사정, 금융 체질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 당면금융시책, 자본시장 동향, 기업의 공개, 자본시장 육성의 기본방향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자료를 재무부가 여러 차례 보고하였기 때문에 앞선 보고와 중복된다. 정부가 8.3조치를 단행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72년 12월 30일 공표된 「기업공개 촉진법」의 구상과 준비작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동향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다. 3차에 걸친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방출하였다. 신용취급의 적극화, 신규 대출서의 발굴을 적극화한 결과, 대출실적이 시중은행의 경우 564좌수 36억원이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하였으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331좌수, 39억의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 이용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82.3%, 국민은행은 54.5%가 신용대출 비율을 차지할 정도였다.

자본시장 동향에서는 전력, 중석, 상업은행, 통운 주식의 주가 동향이 기록되어 있다. 전력주식은 1972년 8월 2일 809원에서 11월 3일에 1,006원으로, 중석주식은 596에서 736원으로, 상업은행주식은 1,165원에서 1,499원으로, 통운주식은 781원에서 1,010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종합주가지수로는 168.1에서 239.2로 급등하고, 1일 거래약정주식이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 주식은 평균 배당률은 13%, 국내 주식은 15.47%, 주가수익률은 3.52%에 비교하여 국내 주식이 10.9%를 기록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긴급자금 200억원 추가 방출

1972년 10월 30일에 재무부에서 작성한 기록물로, 3차에 걸친 중소기업 긴급자금 방출의 경위와 실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지원정책에 대하여 보완 후속조치로 3개월 만에 3차에 걸쳐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금이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긴박감을 기자회견 시 밝히면서 금융권에게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2차에 걸쳐 중소기업 긴급자금 445억원을 방출하였지만, 연말 계절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해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방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연말까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 60억씩 120억원을, 일반 시중은행(5개 시중은행)에 50억원, 외환·신탁은행에 10억원, 지방은행에 20억원을 배정하여 영세 상공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리 15.5%, 1년 기한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도록 하였는데, 국민은행 월부 상환조건 융자는 3년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은행에게 지금까지 소극적인 금융자세에서 탈피하여 대출선을 발굴하고 은행 문턱을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10억원, 국민은행 10억원)과 일반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담보가 미약한 영세기업을 적극 지원할 제도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회전대출한도 거래제 실시(기업자금조달의 안정과 신속 보장)

이 기록물은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조건 완화제도를 지시한 자료이다. 8·3조치 이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재무부가 지시하고 실무는 은행이 담당하는 자금의 전달체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0월 30일에 발표된 금융기관 회전대출(Revolving Credit Line System)은 기업의 운전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금융지원책이다. 11월 15일부터 신용상태가 건전하고 운전자금의 수요가 많은 건전기업에 대하여 자동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회전운용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업의 운전자금조달을 확실하게 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며, 한도제에 따른 융자절차의 간소화로 자금공급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은 상환하고 필요시 수시로 대출받도록 하여 대출 편의와 금리 절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특혜라 할 수 있었다. 공개법인, 한국은행 우대 적격업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받은 기업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금융의 원활화와 영세 상공금융의 확대

1972년 11월 9일에 재무부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서, 8·3조치 이후 자금공급이 중앙에 편중됨으로써 지방금융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침이 기술되어 있다. 지방기업들은 대부분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업자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지원책으로 환원금융제의 실시를 알리고 있다.

환원금융제란 지방에서 조성된 예금이 중앙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각 지방에서 지역자금을 조달하는 자립적 체계를 갖추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은 그 지역의 대출 수요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읍·면의 금융기관 점포망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지방금융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도체계도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담당하되 지방은행은 수신 내 여신체제의 확립으로 동일 점포의 예수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전액 환원 대출하도록 하였다. 어음교환량, 국민소득, 사채규모 등을 토대로 지역별 자금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별 금융 균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은 지방에 중점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방침은 새마을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새마을사업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지역금융기관을 통해 배정하게 함으로써 역량을 보강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서민금융기관으로 전문화한 국민은행은 시장조합, 동업자단체, 공제조합 등 단체 가입에 대해 신용대출을 장려하여 민간 신용조직을 흡수하는 전략을 적극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영세 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대상은 소규모 기업자로서 영업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용대출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대보증의 형태의 신용대출을 취하였다. 연대보증의 내용을 보면, 소액 10만원 이하는 채무자 3인 이상 상호연대보증을, 30만원부터는 대출금액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재산세, 영업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인적

네트워크를 담보로 한 대출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것이어서 연쇄 파산의 가능성이 상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안정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이 기록물은 작성시기가 누락되어 있는데 1971년까지의 데이터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대략 1972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0년대 경제성장과 금융 역할, 한·일 간 금융비교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제성장과 금융의 역할이라는 고전적인 금융이론을 재무부가 한국경제에 대입하여 고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관점에서 1960년대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기록하였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에서는 1960년대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이 담당한 역할이 금융자산의 축적이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예금이 증가하고 금융저축동원체제가 확립되어 금융대출이 확대되어 대출받은 기업에 의하여 투자가 증가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 담보기능, 정부지원자금의 공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주도 하에 기획된 금융질서가 정착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주요 금융자산에 대한 GNP의 비율은 1962년에 비하여 대출금은 19.7%에서 44.9%로, 대외채무는 3.9%에서 37.5%로, 주식사채는 17.8%에서 22%로 증가하였지만, 정부용자는 9%에서 6.2%로 감소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역할이 국민경제에 깊숙이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투자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분석한 표에서는, 1963년에는 총투자 897억원의 53.8%를 법인기업이, 개인 기타가 29.6%를 담당하여 약 83%가 민간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971년에는 각각 50%, 25%로 민간투자의 비중이 75%로 감소하고, 정부투자가 16.6%에서 24.4%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투자재원은 1963년 법인저축으로 33.9% 금융부채로 66.1%가 조달되었는데, 1971년에는 각각 20.5%, 79.5%로 변화되고 있다. 기업의 자기자금 조달율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금융체제 정비와 금융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주택은행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서민금융기관의 확립과 단기금융회사와 사금융의 조직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기록물에서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정책금융 지원실적이 70%에서 73%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저축과 자금의 절대적 부족, 높은 금리, 짧은 대출기한, 담보 부족과 신용대출의 한계, 차입경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높은 금리부담과 짧은 기한의 부채 의존, 담보 부족의 애로를 타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저축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이 해야 할 일로 안정 통화공급과 물가안정을 금융의 주요 기능으로 적시하고, 산업자본 공급재원이 결국 저축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여, 정책금융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8·3조치 집행실적

관리번호 : DA1042239

쪽 수 : 194

생산년도 : 1973~1977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재무부

8·3조치 이후 5년간에 걸친 성과보고 4건을 모아놓은 기록물이다.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1975~1977년에 작성한 <8·3조치 집행실적>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한 <8·3조치의 효과>, <8·3조치 1년의 성과> 그리고 <8·3조치 2주년 성과분석>과 <8·3조치 3주년간 조정사채 처리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기록물은 1975년 8월 3일에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8·3조치 시행실적>과 1977년 8월의 <8·3조치 집행실적>을 다룬 것으로, 세부조치가 실시된 시점에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법령과 함께 작성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8월 31일의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신고액은 3,456억원이며, 조정실적은 2,702억원이고 출자전환과 변제승인, 기한 만료 면제가 2,4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조정사채 처리상황도 사채신고, 증서교부 정리액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특별장기대출의 상환실적도 5개년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1980년 말까지 추정하여 1981년에 전액 상환되는 일정표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한편 <8·3조치 효과분석>에서는 연간 1,0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1977년 8월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고 있다.

【표 12】 8·3조치 효과분석

(단위 : 억원)

구분	1972. 8. 3~12	1973년 중	1974년 중	1975년 중	1976년 중	1977. 1~8 중	조치내용
사채의 조정	247	618	542	477	430	269	연 36% → 연 16.2%로 인하
특별금융조치	37	145	142	137	129	125	연 15.5% → 8%
금리인하	127	347	509	706	736	423	연 19% → 15.5% → 16~18%
계	411	1,110	1,193	1,320	1,295	817	

* 출처 : DA1042239, 63쪽.

뿐만 아니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3】 제조업에 대한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구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비고
총자본 이익	2.49	0.89	3.77	7.90	5.66	3.88	4.61	순이익 / 평균 총자본 × 100
기업 이익률	9.46	8.37	10.55	12.77	10.91	9.50	10.42	순이익 + 금융비용 / 평균 총자본 × 100
매출액 경상 이익률	3.27	1.18	3.94	7.4	4.81	3.42	3.86	순이익 / 매출액 × 100
총이자 부담율	9.09	9.38	8.14	5.64	6.98	7.35	7.33	금융비용 / 부채 × 100
금융비용 대 총비용 비율	9.04	9.54	7.83	5.15	4.52	4.97	4.94	금융비용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영업의 비용 × 100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	9.15	9.86	7.08	4.61	4.46	4.95	4.87	금융비용 / 매출액 × 100
자기자본 비율	23.3	20.20	28.20	34.20	24.00	22.80	21.50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유동 비율	117.10	108.10	128.2	134.2	121.90	119.90	115.70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출처 : DA1042239, 63쪽과 174쪽.

두 번째 기록물은 1973년 7월 28일 재무부가 작성한 〈8·3조치의 효과〉이다. 사채 조정, 특별금융조치, 금리인하, 신용보증, 세제조치와 투자촉진, 산업합리화의 6가지 조치와 보완조치로서의 금융 체질개선, 제2금융권의 확충, 자본시장 육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환율과 물가의 안정, 민간투자의 촉진, 국제수지의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항목별로 도표화하고 있다.

세 번째 기록물은 경제기획원이 1973년 8월 6일 작성한 〈8·3조치 1년의 성과〉라는 33쪽의 문서이다. 조치 당시의 경제 개황, 주요 조치 내용과 추진현황, 조치의 효과,

앞으로의 과제와 보완정책의 방향 등 4장으로 구성된 연설문이며, 부록에는 각 항목의 도표가 정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이름도 서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 기록물은 재무부가 1974년 8월 1일 작성한 22쪽의 〈8·3조치 2주년 성과분석〉과 15쪽의 〈8·3조치 3주년간 조정사채 처리상황〉 2개의 문서이다. 자체 평가에 따르면, 기업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기업자금조정 패턴의 개선, 생산 및 투자의 촉진,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제수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보면, 매출원가 중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일본의 4%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기업이익률이 12.8%로 이자부담률 8.5%를 상회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이 26.8%로 개선되었다. 기업자금조달 패턴은 외부자금 조달 중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및 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이 증가하여 금융시장 다변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 및 투자의 촉진면에서는 경제성장률(GNP 증가율)이 1973년 19.8%, 1974년 18.5%로 나타났으며,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은 13%를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제수지 개선면에서는 1971년 무역수지 적자가 1,046억달러에서 1973년 551억달러로 감소하여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조치 추진현황

관리번호 : DA1042490

쪽 수 : 271

생산년도 : 1981년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철은 4·3조치와 8·3조치의 추진현황 2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4·3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자금의 획기적 지원, 산업합리화를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8·3조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2개의 조치를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조치가 재차 발효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8·3조치 이후 9년 만에 발표된 4·3조치는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금 중 시설자금 전용분의 장기대환,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조정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부 적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3조치는 시설자금으로 전용된 운전자금 대출금의 중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 전방위적인 기업자금지원을 수혈함으로써 파산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한 긴급정책이었다. 단기운전자금의 턴론으로의 전환은 6개 시중은행 628건,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211건, 지방은행 83건으로 총 922건이었고, 금액으로는 각각 3,047억원, 119억원, 234억원으로 합계 3,400억원이었다. 당좌대월 금리를 21.5~22.0%에서 20.5~21%로 낮추고, 어음금리와 회사채 발행금리도 낮추는 등 전방위적 기업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투자 장려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이 8·3조치 시행 1년 이후에 작성한 종합보고서에는 관련 기록이 구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법령 전문, 신고 서류, 세부 규정, 일지, 주요 통계, 대통령 특별 담화문과 긴급명령의 영역문(英譯文)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시킨 8·3 긴급경제조치의 결과”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 1970년 말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였고, 기업의 타인 자본비율이 상승(1965년 48.4%에서

1971년 79.8%)하고, 총자본 이익률이 하락(7.9%에서 0.9%로)한 것은 고리사채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불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8개 항목의 경기회복을 위한 당면 경제정책(1972. 2)과 물가·경기 및 국제수지 대책(1972. 4)을 시행하였으나, 경기부양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8·3조치의 단행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일본의 수입자유화 정책 등의 대외조건 호조와 결합되어 197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9%를 달성하는 견인차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8·3조치 폐지문제

관리번호 : DA1042606

쪽 수 : 128

생산년도 : 1980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철은 8·3조치 폐지를 둘러싼 논의를 수록한 것으로, 법령 해석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질의에서 시작하여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조치의 기한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재무부 금융정책과, 한국은행이 논의한 내용을 다룬 4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8년 전에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8·3조치의 기한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인 1980년 11월에 공문화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에 발효된 조치를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무부와 금융권 사이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첫 번째 문서는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받은 긴급명령의 적용시한에 대한 질의를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에서 접수하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이다. 재무부 내부의 입장을 공문으로 정리하는 문서이다. 내부적으로 1980년 12월 31일로 폐지해야 한다는 설(갑설)과 긴급명령이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는(을설) 2가지 설이 있는데, “무릇 법령은 효력 발생기간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유효”함을 근거로 질의회신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두 번째 문서는 이에 대한 한국은행장이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회신문이다. 긴급명령에 의한 조정사채 상환, 대환 등 특별금융조치가 1980년 8월 2일로 완료되며, 한국은행에게 적립금을 적립한 후 순이익금을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198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까지 자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이다.

세 번째 문서는 질의에 대하여 국고국, 이재국, 증보국, 외환국, 세제국의 5개 부처에 기획관리실 명의로 의견을 묻는 공문의 회람이 진행되고, 그 의견이 공문으로 모아져

있다. 협의과정이 진행되면서 국회에서 폐지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폐기 법률안을 제출기로 결정하는 안을 경제기획원 산업계획과장,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이재1과장, 지세담당관, 상공부 산업정책관, 경무관실 보좌관명의를 협의문이 제출되었다. 폐지 시 발생하는 문제를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1981년 12월 2일 경제기획원은 〈8·3 긴급명령 폐지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두 가지 안의 실무적 문제점을 재차 점검하고 있다.

네 번째 문서는 명령폐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관된 공문형식에 맞추어 정리하고 있다. 세밀하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모아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재무부의 최종 확정문과 국회의원의 의견, 그리고 폐지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Chapter II

10

8·3긴급명령 폐지 법률안 확정에 따른 당부조치 보고

관리번호 : BA0125518

쪽 수 : 9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상공부

이 기록물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8·3 긴급명령 폐지 법률안」이 확정되고 나서 그에 따른 당부조치를 상공부가 보고한 자료이다. 폐지 법률안은 1982년 3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 3월 31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폐지 법률안은 같은 시기 발효 예정인 각종 산업합리화 조치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폐기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 산업합리화 조치와 관련된 법률 적용의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역할분담과 업무를 수록하고 있다.

총 5조로 구성되어있는 폐지 법률안은 ‘산업합리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2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3조), ‘특별융자에 관한 경과조치’(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5조)를 다루고 있다. 산업합리화 자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산업합리화 지정산업과 비지정산업을 구분하여 조정하며, 금융기관 융자자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 법령에 따라 조정되어야할 구체적인 사안은 상당히 방대하였고 법률도 개정되어야만 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안 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도로정비촉진법」 폐지 법률안 등 수많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했고 전체 행정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폐지 법률안은 그 각각의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안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합리화 기준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긴급명령 상의 혜택(상법 규정의 배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결의를 통하여 합리화 기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산업합리심의회 위원으로는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장관과 제1정무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소 부회장을 위원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11

금융 정상화 방안(제1부 시은 운영 정상화)

관리번호 : EA0023238

쪽 수 : 58

생산년도 : 1971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

이 기록물은 경제과학심의회에서 1971년부터 대통령에게 제출한 금융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보고서로, 심의가 진행되기 이전 논의된 의결안건, 금융 정상화 방안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가운데 한국의 금융은 선진국의 발달된 금융구조와는 다른 성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의 역할을 축소하고 집중 시킨 결과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금융 자체는 정상적인 자기발전의 경로를 가지지 못한 채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금융의 본래 2가지 기능 즉, 통화의 공급 및 통화안정성의 유지기능과 자금부족 부문 간의 금융 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출 및 예금이자율의 수준 및 구조, 자금공급의 양과 동향 등을 정부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활동을 정부의 의도대로 유도 내지는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 억제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인 자기발전 계획과 방향을 가질 수 없었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국민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문서들이 1971년부터 보고되고 있는데, 이 기록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작성시점에 따라 추론해 보면, 8·3조치를 비롯한 금융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개혁에 대한 결정은 경제과학심의회위원회가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1971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안건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되는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3급 비밀문서로 제출된 제안에는 1972년에 특수은행을 비롯한 기타 문제를 심의·보고하겠다는 일정이 첨부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금융개

혁에 대한 논의는 8·3조치가 단행되기 약 1년 전부터 전문가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에게 건의한 금융 정상화는 당시 은행 부실경영이 심각하고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은행법」의 기본정신이 민간신용에 입각한 자율적인 상업금융이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면서 자율성과 상업금융이 크게 위축되었고, 예대금리 마진의 감소, 높은 지준율, 대출업 부실화 등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적자로 인한 은행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어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방안으로는 예대마진의 합리, 조정과 지준율 인하, 은행관리기업의 정리, 시중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업무 한도 명확화, 비수익성 자산처분의 촉진, 시중은행 자체 경영자세의 혁신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 7개를 제시하고 있다.

30쪽에 달하는 〈금융 정상화 방안〉은 1960년대 한국금융정책, 1970년대 시중은행의 역할, 시중은행 경영부실화의 원인, 개선방안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급속한 정부 주도의 성장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기 힘들었고, 1965년 금리현실화 이후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률 둔화 등 경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크게 늘어났지만 고금리에 의한 예금코스트의 상승, 정부개발정책에 따른 저금리 개발사업에의 대폭 참여, 지불보증기업의 부실화 경향,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높은 지준 유지 등으로 은행의 경영부실화가 발생하였는데, 1970년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1970년대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국내자금 동원을 위한 민간 신용기구를 정비하고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유도하면서 개인저축의 비중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70년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적자는 조흥은행 29억원, 제일은행 28억원, 상업은행 19억원, 한일은행 15억원, 서울은행 5억원의 총 97억원이었고, 그 중 불건전 대출이 58억원에 달하였다. 적자에 빠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창구로서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정부의 지도 하에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부실기업에게 대출해 준 결과 이자도 받지 못하는 사태

가 적자를 키운 것이어서 해결도 정부가 해주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개선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성자금, 개발자금 등 정책금융은 특수은행이 담당하고, 시중은행은 중·단기 운영자금 및 상업자금 용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은행 간 분업체제 확립
- ② 기업의 시설투자는 자기자본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에 의하여 조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시중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정부주식의 분산 예대마진의 합리적 조정과 지준율 인하
- ④ 은행관리기업의 과감한 정비, 국가의 특별조치에 입각한 비수익성 자산의 처분 촉진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영수지의 개선, 은행관리기업의 정리, 비수익성 자산처분의 촉진, 시중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및 자본 충실화, 시중은행의 책임경영제 확립 5개가 제시되었다. 이는 1970년대 금융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향후의 8·3조치, 「기업 공개 촉진법」, 종합금융 개발 등의 구상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 정상화 방안(종합건의 및 제3부 특수은행 운영 정상화 제6차)

관리번호 : EA0023251

쪽 수 : 38

생산년도 : 1972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의

경제과학심의위원회가 제6차 전체위원회의(1972. 5. 16)를 통해 심의된 건의사항과 특수은행 정상화 방안의 보고문과 의결안건, 22쪽에 달하는 〈특수은행 운영 정상화 방안〉 3가지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건의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이 집약되어 있다. 재무부 장관,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이 참석한 위원회의 종합건의문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 정상화와, 특수은행은 정부금융을 전담하고 중단 기운영자금은 시중은행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6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한국금융제도의 개요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에 기초하여 금융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기록물은 서민금융, 개발금융, 농업금융 등을 특화하여 정책금융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마을운동과 저축장려를 연결하며, 전통적인 민간 신용조직을 흡수하려는 대대적인 국내자금 동원기구를 구축하는 기획서이다. 특히 금융개혁의 추진력을 위기의식을 활용한 전 국민적 운동에서 끌어내고, 나아가 중화학공업화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집중력과 추진력이 정상화 방안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6대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은행의 자주성 제고 :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전 금융기관에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특수은행에 대하여는 대상업무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감독권한을 중앙은행에 집중토록 한다.

② 외화관리기능의 일부 회복

1957년 이래 통화정책의 바탕이 되어 온 재정안정계획은 재정·금융·외환 3개 부문으로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이루고 있으나, 외환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가 약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대외지불 준비는 중앙은행이 보유, 운영케 하고 외환정책 수립에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 대정부 여신, 국채의 무제한 인수 지양 및 차입방식의 개선

국회의 사전동의만 얻으면 대정부 여신과 국채 및 정부보증서의 직접 인수가 무제한 가능케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재검토, 정부의 차입방식을 현대화하여 재정증권, 지방채 등의 유통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④ 특수금융체제의 정비

금융 분업을 명확히 한다. 특수금융은 재원조달방식과 자금공급대상 및 조건 등을 일반금융과 구별하여 경합을 지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은행은 여수신 면에서 시중은행과 경합을 지양하고 개발신탁 등 순수한 신탁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주택은행은 복권발행의 증대 등에 의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및 영세기업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금 경쟁, 점포 경쟁을 일반은행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질서를 지키도록 지원한다.

개발금융과 특수관리업무를 분리한다. 산업은행은 개발금융의 대상을 중점 기간산업에 국한하고 자금공급에 있어서도 운영자금은 공급하지 않는다.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관장한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민소득 수준을 향상하고 조합운동을 증진시켜 조합 상호간의 조합금융을 육성토록 한다. 농협의 공신력을 높이고 농업 금융재원 조달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치를 모색한다.

⑤ 자금조달 방법의 개선

특수은행이 실질적인 투자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특수은행과 미납입 자본금을 정부가 현금투입하고 현물출자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

를」을 개정하여 액면가액이 아닌 실세가액으로 불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단기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융자하면서 발생하는 역수지와 원리금 상환을 위한 확대 재발행의 악순환을 지양하기 위하여 주택 및 산업금융채권을 장기저리채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특수은행의 신설을 지양하고 현존 특수은행의 자금조달방식을 차입금 의존도 감소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⑥ 효율적인 자금운용

부실대출의 방지, 과도한 고정자산의 처분, 저수익성 유가증권의 매각 촉진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정상화한다.

Chapter II

13

금융산업의 개발 방향

관리번호 : EA0023605

쪽 수 : 34

생산년도 : 1979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

1979년 7월 경제과학심의회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 34쪽의 보고서로,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주도가 불가피하지만, 성숙단계에는 민간 주도의 금융질서가 구축되어야 하고, 물가의 안정과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인식이 흥미롭다.

1960년대에는 개발 초기여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도 고도성장이 가능했으나, 1970년대에는 고용증대로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성장으로 1인당 소득이 상승했으므로 자발적 저축능력이 확대되었고, 형평성에 대한 국민욕구가 상승하고 조세징수에 대한 한계, 인플레이적 성장의 한계 등으로 정부 주도적 강제저축은 한계에 달했으므로, 향후 산업자금 동원은 국민의 저축여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주도적 동원체제에서 금융 주도적 자본동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가 은행민영화를 비롯한 민간 주도의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었고, 쟁점들이 1981년 이후 산업합리화 촉진정책이나 민영화사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4】 경제발전 단계별 산업자금 동원체제의 변용

구분 \ 단계별	개발 초기	개발 성숙	개발 완숙
동원주체	정부	금융	기업
가계저축	낮음	높음	낮음
동원수단	통화 팽창, 간접세	금융자산	기업 유보
저축형태	강제 저축	자발적 저축	자발적 저축
성장의 효과	인플레 형평성 저해	물가안정 형평성	물가안정 형평

* 출처 : EA0023605, 3쪽.

또한 한국의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일본과 비교하고, 금융저축률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은 944달러, 1인당 금융저축액은 186달러이므로 1인당 금융저축률은 19.7%인데, 대만은 26.4%, 일본은 29%, 미국은 33%로, 주요 원인이 제도금융을 기피하고 저축자금이 형성될 여유없이 직접 실물수요로 이전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기관 자본금 총액이 1978년 기준 1,822억원인데 일본이 10배, 미국이 38배이며 총 GNP에서 은행의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출활동 규모의 영세성, 화폐시장의 미발달 등의 문제로 새롭게 팽창하는 금융수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1980년대 민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금융개혁 방안으로, 비인플레이적 방법에 의한 자금공급능력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금리가 자금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사채의 실질 수익률이 30%에 달하지만, 정기에금의 실질수익률은 0.9%에 지나지 않고, 제도권 은행에 정기에금을 하였을 때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이므로 사채시장에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저축이 은행예금으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산업자금의 부족, 대출의 이권화, 금융 부조리의 만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금융이 전체 대출의 74%에 달하며 책임의식이 불분명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은 저하되고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산업 및 투자의 이중구조화'라는 정확한 문제의식이 이 자료에는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다. 정책금융의 대상부문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 과잉투자가 되는 반면, 다른 부문은 자금이 부족하고 과소투자가 일어나 자금이 편재되고 애로 인플레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산업의 개편방향은 궁극적으로 금리자유화였으며, 금리정책, 어음거래소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어음거래소의 신설은 새로운 제안이었다. 사채 등 부동산자금을 조직화된 제도금융시장을 유도하여 산업자금화하고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사채거래의 양성화를 통하여 음성적 거래에서 오는 각종 비리를 제거하고, 실질금리에 의한 어음할인을 허용하여 점진적인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음거래소는 기업의 1년 미만 단기어음을 불특정 다수의 발행자(기업)와 매입자(사채업자 등)가 경쟁적으로 경매하는 단기어음 발행 및 유통시장으로 기능케 하고 거래할인율을 자율화하여 실질금리 형성을 유도한다는 발

상이었다. 거래소는 어음거래에서 수수료만을 취득하고 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이었다. 거래소의 운영은 증권거래소 부설로 하고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어음매매 수탁업자를 거래원으로 하여 점차 독립법인으로 발전시켜 간다는 발상이었다. 사채거래를 어음거래소로 양성화한다는 기획으로 어음거래의 비중이 높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이 높은 개혁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화폐시장 개혁은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통한 통화조절과 재정증권, 콜, 국공사채 기업어음, CD 등 단기 화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회사채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의 국공사채 거래기능을 조직화하고 점두거래를 활성화시켜 가격형성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회사채 금리를 자율화하여 단계적 금리자율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증자를 유도하여 조성하고, 은행주를 국민주로 육성하여 민간상업은행의 설립,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상당히 획기적인 금융개혁의 구상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전두환 정부의 금융개혁의 단초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금융부문 계획(안)

관리번호 : BA0143176

쪽 수 : 49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금융부문 실무계획반

금융부문 실무계획반이 1981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자금순환 전망, 부문별 정책 방안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정책방안은 8개 부문별로 제시되어 있다. 통화공급의 적정화, 내자동원의 극대화,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금리기능의 활용, 정책 금융의 재정비, 금융기관의 역량 확충, 금융시장의 다원화, 금융 수요변화에의 효율적 대처 등 8개 항목이다.

5차 경제개발계획은 1970년대까지의 성장 최우선의 정책 기조를 체질 개선, 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정·자율·개방’의 3가지 표어를 내세운 경제정책의 기조가 금융개혁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정부 주도의 공공 토목공사의 조기 집행 및 주택건설 촉진, 수출 확대 및 수입 적정화, 유동성의 적정관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이 추진되었다.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25%로 책정하여 긴축기조를 견지하였지만,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양면 전술을 활용하였다. 긴축적인 금융정책도 1981년 하반기부터는 완화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확대하여 적정 유동성을 관리하였다. 이같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여 1981년 중 성장률이 6.5%로 안정화되고 물가상승률도 21.3%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53억에서 46억달러로 축소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은 2차 국제석유파동의 충격과 함께 무리하게 추구되어 온 고도성장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른바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기조는 금융부문의 개혁안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모든 계획은 5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의 성장률, 수출·입, 외환보유고 등 경제전망을

근거로 한 것인데, 5개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5%, 물가상승률은 10.2%, 총투자율은 32.3%를 전망하고 있다. 총투자 규모는 4차 계획까지의 투자율을 근거로 제시된 것이었다. 1972~1976년간 투자율 27.1%, 1977~1981년 평균 31.7%를 기초로 1982~1986년 32.3%의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었다.

4차 경제개발계획과 비교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내세우고 이전 시기와의 차별을 강조하려 했지만, 실제로 금융부문 개혁의 내용은 앞서 1979년 경제과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금융산업 개발방향 등의 내용이 8개 부문별 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리의 단계별 자유화, 어음시장의 활성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분업화 등이 그 예이다.

거액 어음부도에 따른 문제와 대책

관리번호 : BA0790410

쪽 수 : 49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1982년 5월 4일 발생한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의 경과와 대책을 보고한 것이다.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관련 기업의 어음발행 현황과 자금 사용 내역, 사회·경제적 배경, 기업, 종업원, 시중자금 검색에 대한 대처 및 제도적 개선방안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1980년대 초반 유동성 쇼크가 파급되는 경로를 살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한국 금융시장의 허점과 총체적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고,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다. 검찰조사로 밝혀진 사건 경위의 주요 내용은, 1981년 2월부터 100~200억원을 연 20~22%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유리한 차입조건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체를 골라서 정치적 인맥을 이용하여 차입해 주고, 차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어음을 전부 할인하거나 신용있는 타 회사 어음과 맞교환하여 사채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한 것이었다. 거액 예금을 미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보유 부동산 및 타사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은행에 차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어음결제를 직접 장영자 개인이 하였지만, 점차 교환회부(지급을 위한 제시)가 집중되면서 교환결제용 발행을 요구하게 되고 2개월 결제분을 미리 받고 이미 보관용으로 발행한 어음의 반환을 미루었던 것이다. 어음 남발로 어음신용이 떨어져 할인이 어렵게 된 경우 보관용으로 거액 어음발행을 요청하면서 이미 발행된 어음의 반납을 미루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대해서는 부도의 압력을 가하거나 도와줄 것을 과시하여 기업이 거절할 수 없도록 교묘히 유도하였다.

관련 기업으로는 공영토건, 일신제강, 태양금속, 라이프(주), 삼익주택, 해태제과를 들 수 있다. 총발행 잔고는 1982년 5월 10일 현재 2,624억원이었고 가장 큰 규모의 어음발행을 한 기업은 공영토건으로 1,468억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차입액은 576억원이었고 공영토건의 차입액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5쪽에는 〈돈의 행방〉이라는 검찰의 최종 발표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7,215억원의 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계산해 놓았다. 또한 7쪽에는 검찰조사 자료를 근거로 장영자의 1,476억원 자금사용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서는 거액 부도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경기침체 외형적 확대 경제운용의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능력에 넘치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방만한 기업 의식이 배태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지자 불황 시 적응능력이 부족해진 것과 중동의 자금사정 정색에 따라 미불대금이 증가하고 수주경쟁의 과열로 일부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심화되었던 것이 주요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물에서는 처리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정치인이 관련된 사실 그대로를 모두 공개하고 자생능력이 있는 기업은 자체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이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영토건, 일신제강, 태양금속, 라이프주택, 삼익주택, 해태제과의 재무상황, 손익상황, 금융차입 및 담보상황, 주거은행의 판단에 대한 조사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각 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유도, 기업 관련 세제의 개편, 주식회사 경영의 건실화 유도의 방향이 서술되어 있다.

제2금융권 활성화 및 은행업무의 다양화

관리번호 : HA0005766

쪽 수 : 20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재무부

1982년 7월에 재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시중은행 민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로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재무부 장관, 부총리, 국무총리의 결재사인인 있는 문서로, 제2금융권의 활성화와 일반은행의 업무 다양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권에 대한 정비는 이른바 어음사기사건의 처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이 작성된 시점이 1982년 5월 어음사기사건 직후였기 때문이다. 1982년 5월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던 이른바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은 총 6,400억원의 어음을 유통하고 1,400억원을 사취한 사기사건이었다. 그로 인하여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였고, 연쇄부도와 제2금융권의 붕괴가 우려되었다. 파장은 계속되었고, 사채시장을 양성화시키고 건전한 제2금융권 발전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으며, 이후 금융실명제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기록물에도 금융실명제의 단서가 나타나 있다.

먼저, 제2금융권의 현황과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단기금융회사 20개사와 상호신용금고 191개사가 있었지만, 설립제한 등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의 이권화가 문제였으므로 신규 설립 및 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원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금리자유화를 통한 사채 흡수기능을 제고하며 제2금융권 확대에 따른 예금자 보호장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설립인가 기준도 완화하였는데, 최저자본금을 서울 200억원, 지방 100억원으로 차별화하고 임원자격을 1/2 이상 금융기관 차장급 이상 경력자로 하고 신용관리기금에의 출연 의무화를 자본금의 10%로 규제하였다.

금리 실세화의 추진도 제기되는데,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세화를 추진하며 1차적으로 상호신용금고부터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최고 금리 및 수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나친 자금의 이전을 방지하고 은행금융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며, 향후에는 은행금리의 자율화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은행의 업무 다양화는 금융시장 간의 경쟁체제로 인하여 시중은행 수지악화 보전을 위한 업무영역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 다양화의 내용은 은행보관 상업어음 매출업무, 매출채권 추심업무, 상호부금업무, 신탁업무, 증권투자신탁업무, 증권업무, 나아가 리스업무와 단자업무까지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82년 7월에 재무부가 작성한 <시중은행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 대상은행,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방법, 추진계획,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은행으로 조사된 은행은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을 들 수 있다.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 대상분은 제일은행의 경우 전체 주식의 23.9%, 서울신탁은행은 26%였다. 매각원칙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 제안되었는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인상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50%씩 매각 수량을 배분하며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법인 총자산의 10% 범위 내에 서만 매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정가격은 최근 30일간 증권거래소 실물가격을 가중 산술 평균한 가격이며, 8월 25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9월 23일에 민영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었다.

단기 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인허가 기준은 인구 50만명당 1개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부산·대구·인천을 제외한 인구 30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1개도당 1개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상호신용금고는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인구 7만명당 1개사, 기타 지역은 인구 5만명당 1개사로 제한을 두었다.

유가증권 집중 예탁제도 운용의 효율화 방안

관리번호 : DA0130309

쪽 수 : 25

생산년도 : 1984

생산기관 :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을 한 기관에 집중 예탁시켜 실물 이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장부상의 결제 및 권리행사를 대신하게 하는 증권예탁제도는 1983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이 기록물은 증권예탁제도가 실시된 1년 후, 운용현황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한 문서로, 증권예탁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향과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유가증권 집중 예탁제도가 1년간 실시되면서 증권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90% 이상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요 기관투자자에게 대체결제회사에 예약구좌 설정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명의개서 등을 위한 실물 이동이 빈번하고 소액 채권의 물량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예탁주식 명의통합제도를 도입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일원화 할 것, 공사채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체결제회사를 등록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할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기록물에는 예탁결제원이 설립되기 이전 대체결제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장채권(非上場債券)과 담보물 관리 및 증권금융(주)의 업무분장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단계별 추진계획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예탁구좌 설정 유도조치와 신규 상장회사 주식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대체결제회사와 체결토록 하는 것을 즉시 시행하고, 1984년에는 증권금융(주)의 증권회사 담보 유가증권 전량 집중과 비상장채권에 대한 부분적인 집중 예약, 자체 명의개서 기관업무의 대체결제회사 이관, 채권등록업무, 예탁주식 명의통합제도를 실시할 것과 1985년까지는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대체결제회사로 완전 통합할 계획이었다. 이 기록물에는 1983년 6월 30일 현재 구좌 설정자별 예탁현황(50구좌)과 구좌 미설정자 현황(총 95사)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증권거래원의 명부와 기관투자자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Chapter II

18

유가증권거래의 실명화 방안

관리번호 : BA0889018

쪽 수 : 44

생산년도 : 1990

생산기관 :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반

금융실명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1982년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지만, 유명무실한 채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고 실명제를 연구하였지만 또 다시 보류되다가 1993년에서야 전격 실시되었다. 이 기록물은 금융실명제 실시 3년 전인 1990년에 금융실명제 준비단이 작성한 〈금융실명제가 금융시장구조에 미칠 영향과 실명제 실시방향〉과 〈유가증권거래 실명화 방안〉의 2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금융실명제가 수차례 보류되긴 하였지만, 준비단에 의하여 연구와 대안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가증권 실명거래제가 1991년 실시될 예정에 있었고, 1990년에는 그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놓여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제가 오랜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작업을 기초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에서 작성한 〈유가증권거래 실명화 방안〉에는 채권, 증권, 장외 직거래 유가증권의 실명화 방안과 별첨으로 주요 채권의 발행 및 잔액현황, 강제 참가소화 국공채 현황, 관계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991년 1월 전면적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상 유가증권거래 실명화 방안의 제도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실명법상 유가증권 거래의 실명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 및 인수매출하고, 매매는 금융기관이 직접 매매 및 위탁매매하며, 원리금 및 배당금 지급은 직접 지급 및 지급대행을 하고 있었다. 이 기록물에는 전면 실명화 실시에 앞서 참가소화 국공채의 최초 매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의 비실명거래를 인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모두 원리금 상환시에 실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공개 시 사실상 금융기관이 인수 또는 취급대행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증자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유상증자 중 공모증자 및 실권주 공모 시에 청약사무 취급기관에서 실명거래를 유도하고, 주식매매 시에도 거래소 및 점두시장을 통한 거래나 장외 직거래에서 주문표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발행이나 매매 시에 어떻게 실명을 확인할 것인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

보험산업 장기발전 방향(안)

관리번호 : DA0130308

쪽 수 : 71

생산년도 : 1985~1986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재무부에서 1985년, 1986년에 작성한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전망에 대한 문서이다. 동일한 제목으로 작성시기가 다른 3가지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외 자료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풍부하다.

1985년에 작성된 첫 번째 문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앞으로의 보험산업 전망과 정책방향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보험산업의 성장과정을 1950년대 태동, 발아기, 1960년대 기반구축기, 1970년대 성장발전기, 1980년대 성숙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험제도가 점차 국민생활에 정착하고 보험저축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영내실화 자율경쟁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보험산업 성장률 추이를 도표화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성장을 1인당 GNP, 1인당 보험료로 구분하고 1970년부터 1984년까지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성장가능성을 추정하였는데, 1984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보험료는 117.9달러에 불과하여 일본의 20%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1단계는 지방경제권 중심의 지방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국내시장 개방에 맞추어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5~1991년의 보험산업 발전 전망을 경제지표와 회사수 수입보험료 총자산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1년에는 1인당 GNP가 3,650달러에 이르고 생명보험회사가 10개, 손해보험회사가 13개, 외국계가 생보 7개, 손보 3개, 외국진출 보험회사가 총 15개에 이르며, 수입보험료는 11조, 총자산은 34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6년에 작성된 <보험산업 장기발전방안>은 1985년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보험회사 경영수지의 개선 중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수지 개선 제안과 보험자산운용의 효율화가 새로 포함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현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일 간 1인당 GNP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5백만원인 것에 비해 일본은 2,500만원이었다. 또한 보험전문인 양성과 보험기술의 개발을 강조하고 보험회사 교육연수비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데, 생보사의 사업비 중에서 교육연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한 현실이었다.

보험산업의 근대화 방안 수립

관리번호 : DA0198534

쪽 수 : 49

생산년도 : 1986

생산기관 : 재정경제부

이 기록물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보험산업의 근대화〉 필요성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포함하여 당시 보험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라 법령의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기존체계는 일제시대부터 적용되어 온 것이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에 이르러 새롭게 정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대 초에 제정된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재정비하고 「보험업법」의 큰 틀 안에 통합하는 법령이 제정된 것은 1977년이었고, 그 준비과정을 담은 문서가 바로 이 기록물이다.

본 기록물에서는 ‘보험산업의 근대화’의 필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보험제도와 체제의 개편, 경제개발계획의 지원, 보험산업의 근대화 및 국제화 지향이에 해당한다. 핵심 내용은 관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금융개혁의 기초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었다. 보험회사의 자립성과 자유경쟁체제를 확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을 준비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다. 16가지 기본요강은 보험사업의 국제화, 생명 손해보험 겸업문제, 모집제도 및 손보 폴 개선, 재보험제도의 개선과 재보험공사 민영화 문제, 자산운용의 합리화, 보험 감독기능 강화, 요율산정기관의 기능 강화, 보험육성 및 조정기관의 신설, 위험보증금제도 신설, 보험인 질적향상과 체질개선, 신종상품 개발과 약관 정비, 자동차보험 운영 개선, 화재보험협회와 특수물건 인수제도 개선, 생명손해보험협회 기능 강화, 각종 보험조정 문제, 생보열세회사 정비문제 등을 담고 있다.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16가지 사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및 장단점,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험공사기구(안)〉에는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정비안이 서술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생명보험 열세회사 정비문제’라는 항에는 생보 6개 회사의 1975년 말 영업상황과 경영불합리로 인한 누적된 손실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한·제일·동방·흥국·대교·동해의 6개사 보험의 손실 총액은 108억으로 모든 회사가 적자상태였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점사안은 보험산업의 국제화였다. 당시 외국사는 손해보험 2개사와 생명보험사 7개사가 진출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또는 손해보험 재보험으로만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개방화 기조 하에서 보험산업도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수용태세를 확립하여, 외국 진출 보험회사 도입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보험시장의 잠식, 과다 경쟁에 따른 보험료율 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었다. 개방화에 따른 보험 관련 법안도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시장의 확대와 신종상품 개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과열 경쟁과 보험산업 전문화 기조에 상반되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설계인 모집제도 및 손보 pool 문제와 재보험시장도 보완되어야만 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제도개선의 방향이 정립되면서 보험감독과 발전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보험공사기구(안)’의 설립안이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생보열세회사 정비문제(生報劣勢會社 整備問題)〉기록물은 생명보험회사 6개사(동방, 대교, 대한, 제일, 흥국, 동해)의 계약고, 보험료율 등 영업실적에 대한 비교와 경영 불합리로 인한 손실 누적분에 대한 분석, 사업비 지출현황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최종적으로 영업실적 개선방안과 함께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과연 한국에 몇 개의 보험회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서에 함께 수록된 참고자료에는 적정 보험회사 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민소득이 631달러였던 1963년에 보험회사 수가 21개였는데, 한국은 국민소득이 627달러인 1976년에 보험회사 수가 6개이며, 보험회사 1사당 국민 수도 일본이 550만명, 미국이 11만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580만명으로 과밀한 편이라는 근거를 들어 보험회사 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보험

회사의 부진한 경영실적은 회사 수 때문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내자 조정적 측면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하여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보험산업 근대화를 위한 16가지 기본요강

- ① 보험산업의 국제화
- ② 생명, 손해보험 경영의 문제
- ③ 모집제도 및 손해보험 물제 개선
- ④ 재보험제도의 개선과 재보험공사 민영화 문제
- ⑤ 자산운용의 합리화
- ⑥ 보험감독기능 강화
- ⑦ 요율산정기관의 기능강화
- ⑧ 보험육성 및 조정기관의 신설
- ⑨ 보험보증기금제 신설
- ⑩ 보험인의 자질향상과 체질개선
- ⑪ 신종 상품개발
- ⑫ 자동차보험 운영개선
- ⑬ 화재보험협회와 특수물건인수제도 개선
- ⑭ 생명, 손해보험협회 기능 강화
- ⑮ 각종 보험제도 문제
- ⑯ 생보열세회사 정비문제

21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관리번호 : DA0130465

쪽 수 : 51

생산년도 : 1988

생산기관 : 재정경제부

이 기록물은 1981년부터 진행되어 온 자본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진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로드맵을 작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80년대 말의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현황과 관료와 전문가그룹의 기본방향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개방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외국인 직접증권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간접 개방(외국인 투자펀드 및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1988년 당시에 자본시장 개방의 전제가 되는 무역, 외환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으며, 금리자유화 등 금융시장의 자율·국제화가 추진되어 증권시장 개방의 여건이 성숙되었다. 정부는 <선진화합 경제추진대책(1988. 10. 14)>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국제화의 연차별 일정'을 수립하여 외환자유화, 금리자유화, 금융실명제 등 개방여건의 종합적 로드맵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을 검토토록 하고 답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추진될 자본시장 국제화의 확대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여론을 수렴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는 개방여건이 성숙되는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제한적인 증권산업 개방, 대외진출 등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연차별 개방일정을 예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1~1992년에는 어느 정도 개방여건이 성숙될 것을 예상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와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영업을 제한적,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그 시기와 허용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자본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직접금융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1988년 당시 상장법인 수는 496개, 장외시장 등록법인 수는 24개였는데, 이를 1992년 말까지 각각 800개, 100개로 확대하여 직접금융과 은행 여신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자유화 추진에 대응한 채권시장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이 기록물은 자본시장 개방을 향한 청사진이 열거되어 있으나, 당위성이 강조되고 체계적인 대응을 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치 또한 분석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지를 담은 구상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與件과前提	年度	資本市場開放	證券產業開放
- 貿易·外換自由化의成熟 - 換率의安定과金利의價格機能正常化 - 間接規制方式에 의한通貨管理制度의定着 - 金融自律化의定着·金融産業改竊및金融國際化등을 통한金融産業의發展 - 資源配分の效率性 및公平性增大를 위한與件造成 o 土地綜合課稅實施('90) o 金融實名制實施('91) o 金融資産所得綜合課稅實施('91) - 資本市場의受容態勢整備 o 市場規模의短期的擴大및長期安定的인投資需要基盤擴充 o 證券自律化와公正去來慣行定着 o 證券監督機能의強化 o 證券電算網의擴充과賣買締結의完全電算化 o 專門人力의確保와國際業務能力培養 o 内部留保擴充을 통한證券會社의財務構造健全化 o 證券業務의自律化와競爭體制確立 o 證券會社의합리적經營風土定着	'89	- 外國人投資펀드등의擴大 - 海外證券發行制限緩和와種類의多樣化 o 經濟與件을考慮하면서資金用途등發行制限緩和 o CB以外에BRI, DR發行등商品多樣化誘導 - 海外證券轉換株式의外國人間場外去來自由化 o 現在는轉換後去來所를 통한內國人에만賣却可能	- 外國證券社의既存國內證券社에 대한持分參與範圍擴大('89. 1. 1.부터施行) 現行擴大 o 1社當5%이내10%이내 o 全體10%이내40%이내 - 外國證券社의國內事務所追加設置許容
	'90	- 國內證券와海外證券을同時에投資하는國內外混合펀드(Matching Fund)를設定하여그受益證券을內·外國人에게販賣 - 海外證券發行의持續的擴大許容 o 發行對象企業,資金用途등에대한規制를大幅縮小	- '91年外國證券社의國內支店設置및新規合作證券社設立許容에 대비'90年末까지許可基準마련 o 資本金(營業基金),營業範圍,國內外合作先資格,許可節次등
	'91	- 部分的인外國人直接證券投資許容(海外證券轉換株式의國內販賣分에 대한國內再投資許容) o 投資者:CB등海外證券의轉換에 따라國內株式을取得한外國人 o 投資對象:國內上場株式(禁止業種除外) o 投資資金:轉換株式取得範圍內(新規投資資金流入禁止) o 投資限度:種目當,1인당및의국인총한도설정	- 外國證券社의國內支店設置許容 o 支店數,營業範圍,營業基金등은證券規模,國內證券産業의競爭力등을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決定 - 新規合作證券社設立여용 o 合作會社數등은證券規模,國內證券産業의競爭力등을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결정 o 國內外合作先資格要件,持分比率等基準제정 ※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
'92	- 一般外國人의直接證券投資를一定限度範圍내에서許容 o 投資者:一般外國人投資者 o 投資對象:國內上場株式(禁止業種除外) o 投資限度:種目當,1人當및外國人總限度設定	(上同)	

【그림 5】 자본시장 국제화의 실시여건과 연차별 확대 추진계획 요약(1989~1992)
(DA0130465, 21쪽)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안

관리번호 : DA085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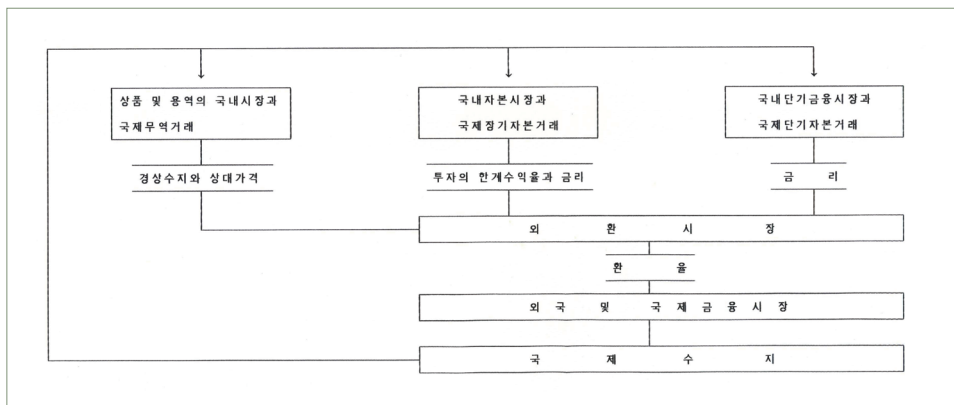
쪽 수 : 32

생산년도 : 1989

생산기관 : 재정경제부

이 기록물은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연계 강화와 관련하여 외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의 중간보고자료이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하나의 시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을 때의 효익과 전제조건으로서의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개방적인 강소국(Small Open Economy)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구상이 담긴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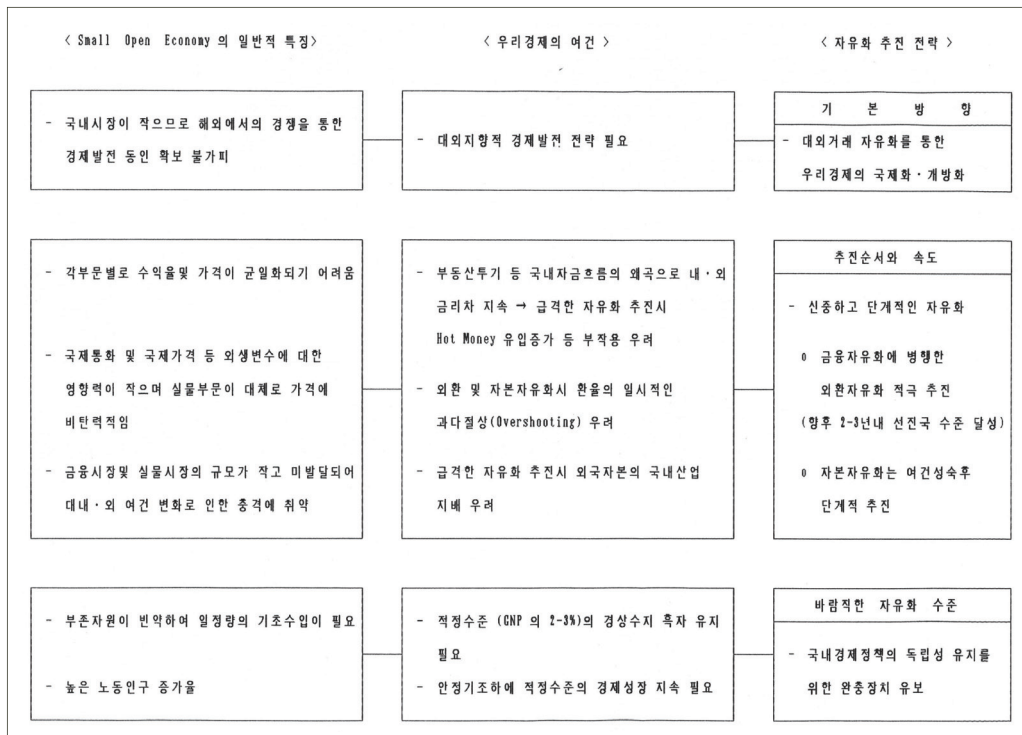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안(중간보고)〉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통합과 외환 및 자본자유화, 외환 및 자본자유화 추진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계획과 함께 일본·대만 및 호주의 외환·자본자유화 추진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장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환율 및 금리의 가격기능에



【그림 6】 통합된 금융시장의 모습
(DA0852273, 3쪽)

의해 국가 간의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조정되어 동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래는 통합된 금융시장을 구상한 도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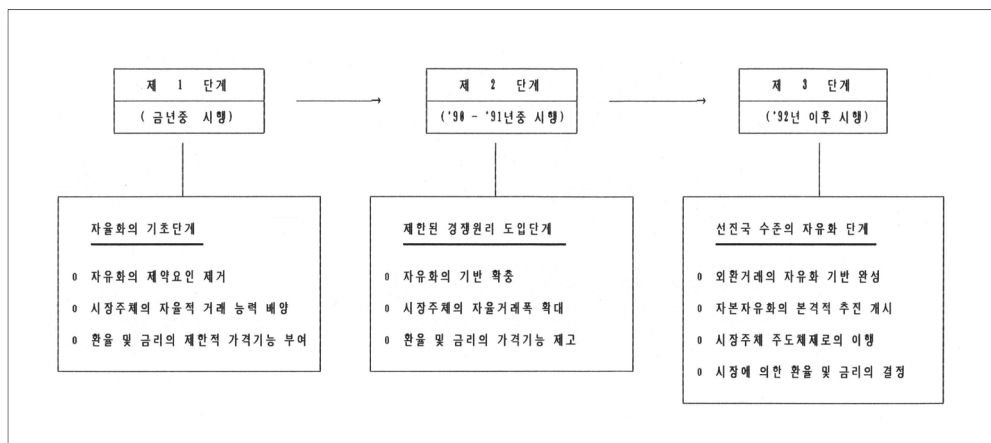
그로 인하여 금융자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개인 및 기업이 선택가능한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시켜 자산보유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러한 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유화,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통한 외환거래의 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림 7】 우리나라 여건(Small Open Economy)에 따른 외환 및 자본자유화 추진전략
(DA0852273, 8쪽)

추진계획은 1단계(1989년), 2단계(1990~1991년 중), 3단계(1992년 이후)로 1992년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에는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 단계에 도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 수준이란 외환거래의 자유화 기반이 완성되고 자본자유화가 본격 추진되어 환율,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주도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의 외화차입을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단계별로 추진일정을 정리하고 있다.



【그림 8】 외환 및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의 단계
(DA0852273, 9쪽)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

관리번호 : DA0130477

쪽 수 : 165

생산년도 : 1989~1994

생산기관 : 금융위원회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국책은행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것으로, 약 4년간 관련 기관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검토내용이 집약되어 있으며, 보도자료와 각 은행의 경영 실적 자료, 법안과 금융기관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이 나오기까지의 세부 논의와 참고자료를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에는 보도자료로 배포한 〈민영화 추진방안〉을 비롯하여, 〈외환은행 민영화 실적과 경과 등에 대한 자료〉, 〈국민은행법 폐지 법률안〉, 〈외환은행 민영화 세부 추진계획〉, 〈민영화 추진 관련 금융주 매각에 따른 주식 공급물량의 확대〉를 재무부 증권국에서 대변인실을 통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국책은행, 담배인삼공사 및 출자회사 민영화 추진계획〉, 〈상장 신청절차 관련 서류〉 등 다양한 관련 자료가 원본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외에도 1993년 11월에 한국외환은행이 작성하여 재무부 은행과에게 보낸 〈당행 주권의 조기상장〉이라는 원본자료가 들어 있고, 1989년과 1990년에 이재국이 작성한 〈외환은행 주식매각방안 검토〉 보고서와 1989년 민영화추진팀의 기초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지만, 1987년 6·29선언 등 정치민주화의 열기 속에 논의가 중단되다가 11월부터 국민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포항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전매공사 등 7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5조원 상당의 주식을 5년 동안 중하위 계층 500만 가구의 국민들에게 배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부터 재개되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국책은행의 매각이 실무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4차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린 1989년 2월부터였고, 그때부터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이 기록물이다.

연대기를 따라서 민영화방안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3월에 작성된 <정부 보유주식 매각방법 검토>라는 기록물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민영화추진반 기획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를 위해 Task Force팀이 조직되고 추진방향과 일정이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은 정부 보유주식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공모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을 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5가지 방식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유주식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내규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회계 규정상 투자자산의 매각방식이 국유재산 처분 시와 대동소이하고, 다만 「증권거래법」 상의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 공모방식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 보유주식 처분방법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TF팀 민영화추진반의 의견이었다. 5가지 방식 중 공모,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을 하였을 때에는 상장주식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고,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도 해당기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공모 매각방안은 기업공개 시의 일반적인 매각방식으로써 발행 총주식의 30% 이상을 일반대중에게 공개 매출하는 방법인데, 공모주식 청약자격자는 실명 개인에 한하며 일반증권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공모금액의 45%를 배정하고, 근로자 증권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에게는 공모금액의 30%를 배정하고 우리사주조합 20%, 투자신탁회사 5%를 구분 배정하였다. 주식 청약한도는 1인 1건으로 공모금액의 3/1,000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 청약한도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주방식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균점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공공적 법인의 주식을 다수 국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주 대상기관을 배정하는 데에는 4가지 기준을 따랐다. 정부가 당해 법인주식처분의 30%를 소유하고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

익이 예상되는 기업,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과 같이 4가지 기준을 세워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매각대상으로는 국민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모금액의 78%를 배정하고 우리사주 20%, 일반청약자에게 2%를 참여시킬 것이며 국민주청약예금 가입가능자도 근로자, 농어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60쪽에 있는 매각방식별로 장단점을 정리한 비교표는 상당히 일목요연하다. 일반공모, 국민주, 입찰방식의 목적, 성격, 매각대상자격, 비율 참여인원, 주주 구성, 공개 충족 여부, 주식 소화 여부 등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어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매각방식별 절차를 비교하여 첨부하고 있어서 향후 모든 논의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민영화추진팀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이재국이 1989년 7월에 작성한 <외환은행 주식매각 방안 검토>(137~154쪽)에는 검토배경, 기본방향, 매각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매각방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외환은행 일반현황, 매각방식별 절차 비교, 매각가격 산출근거, 신설 금융기관의 출자자 제한 내용, 매각방안에 대한 한국은행안과 외환은행안의 비교가 첨부되어 있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였지만, 실제로 민영화가 추진되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록물이다.

외환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조기에 완전 매각할 것인지, 적정한 분산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의 선택여부를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매각방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는 매각방식(일반공모, 입찰매각 방식), 매각가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 매각시기(분할 매각), 증자규모(공개 후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기록물에는 그 각각에 대한 일정표와 절차가 상세히 보고되어 있으며(150~153쪽) 외환은행의 1988년 당시의 경영지표, 인원, 점포수, 매각방식별 절차 비교가 소요시일까지 정리해 두었으며, 매각가격 산출근거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나누어 계산식을 정리하고 있다. 신설 금융기관의 출자자 제한내용도 참고 <자료 4>에 첨부되어 있는데, 동화은행, 중소기업 전담은행, 지방투자신탁, 지방리스회사, 지방생명보험회사, 합작생명보험회사의 분류 하에 출자자, 제한내용이 도표로 그려져 있다. 또한 매각방안에 대한 한국은

행(안)과 외환은행(안)이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로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30%만 공개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에 반하여, 외환은행은 일반공모 또는 혼합방식에 의한 일괄 매각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000원 이상(수지 개선 미통화 환수)의 매각가격으로 분할 매각을, 외환은행은 10,000원 이하(시장소화 및 우리사주)의 매각가격에 일괄 매각을 제안하고 있으며, 증자규모를 납입자본금 5,000억원 유지 하에 950억원을, 납입 자본규모 6,000억원 유지 하에 1,950억원을, 증자시기 면에서는 증자와 동시에 공개, 공개 후 증자 등으로 사안마다 두 은행의 입장이 뚜렷이 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은행 주식매각 방안 검토>(106~136쪽)에는 매각의 기본방향과 쟁점, 논의사항 검토 등과 함께 외환은행의 영업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집대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989년 7월 작성된 <외환은행 주식매각 방안 검토 -민영화 관련->을 초안으로 첨부자료를 일부 보완·정리한 것으로, 내용이 대부분 중복된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1차로 1990년 7월 이후에 한국은행 지분 2,000억원과 증자분 1,000억원을 일반공모방식에 따라 일반에게 매각하고, 1차 매각 후 증시상황을 주시하며 잔여분 2,050억원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입찰 잔여분은 재입찰하고, 추가 증자의 시기 및 규모는 증시동향 및 외환은행 자금포지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26쪽 이하에는 일본전신전화공사(NTT) 주식매각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으며, 135~136쪽에는 1989년 말 외환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요약되어 있다.

1993년 11월에 작성된 한국외환은행이 재무부에게 보낸 <당행 주권의 조기상장>(99~105쪽)이라는 제안서에는 외환은행 민영화의 추진정도와 당면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민영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조기상장의 필요성 및 명분, 추진여건 및 추진방안, 한국통신의 주식공매 사례와 재무부·한국은행 보유주식 매각안 검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은행측의 입장을 정리한 이 기록물은 이미 민영화가 되었으므로 조기상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환은행은 1989년 12월 30일 「외환은행법 폐지 법률」이 공포되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이미 제도적으로는 민영화가 달성되었다. 1991년 12월 5일부터 신주공모에 의한 증자를 실시하여 17만여 명의 민간주주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

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정부 1.65%, 한국은행 65.3%, 민간 소액주주 33.05%의 주식이 분산 보유되었으며, 1991년 12월에는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신규 투자자의 환금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증자를 원활히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증자기반의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외시장 공모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초 공모가격 7,000원을 밑도는 장외시장의 수준에서는 일반주주 대상의 공모로 증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의 주식을 전량 장내시장에서 매각하여 실질적 민영화를 완성해야만 자본 조달이 원활해 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한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매각〉(88~89쪽)은 앞선 외환은행의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1989년 12월에 「한국외환은행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1990년 1월에 일반 상업은행으로서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외환은행의 실질적 민영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본래의 계획에 따르면 1994년 중에 정부지분 100억 원을 매각하고 1994~1995년에 한국은행지분 3,950억 원을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장가능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공모가격을 하회하고 거래량도 저조한데, 상장 일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강행하면 7,000원 이하에서 매각해야 할 것이고, 그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4,050억원에 이르는 매물 소화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므로 일단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가격이 회복된 이후에 시장가격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거나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상장요건 중 납입자본금 이익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1995년에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서 재무부 장관 직권 상장이나 증권위원회 특인에 의한 상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관련 참고사항〉(94~97쪽)에서는 1994년 중 일평균 장외 거래물량, 5대 시중은행 납입자본 이익률과의 비교, 정부지분 매각요건 및 국민은행 충족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거래동향인데, 1993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가격, 수량, 평균가격 등을 필사메모가 되어 있다. 외환은행 주식의 1993~1994년 장외 거래실적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86~87

쪽에는 외환은행의 상장 신청절차 및 서류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69~86쪽)에는 담배인삼공사, 국책은행 등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일정별로 정리되어 있다. 1994년 중에 국민은행 민영화, 1997년까지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 담배인삼공사, 1994년 중에 외환은행 정부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한국은행 지분은 1994~1995년 중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새한중금 등 17개사, 중소기업은행은 동남은행 등 5개사, 국민은행은 전 출자회사 13개, 주택은행은 한성생명 등 5개사, 담배인삼공사는 공영기업 등 3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통폐합, 청산할 계획이었다. 이어서 1993년 12월 29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제기획원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기관의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이양되며, 민영화 시기는 기관별 추진여건 및 증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증시 불안을 이유로 민영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증시매각, 일반경쟁 등을 추진방식으로 검토하고 대기업의 참여는 여신관리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47개사 8,992억원의 민영화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한국외환은행이 1994년 1월에 작성한 <외환은행 주권의 상장>(47~54쪽)에는 외환은행 민영화 세부 추진계획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계리부가 한은 보유의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보고서(55쪽)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안은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은 보유주식 매각이 한은 수지, 통화량 및 주식시장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이에 주식매각 방법 등에 대해 한은이 입장을 협의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가격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적정 보상을 확보토록 제안하고 있다. 공정성, 공개성을 확보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무부 증권국에서 작성한 <주식공급물량 확대>(63~66쪽)는 재무부 대변인실에서 보낸 기록물로, 정부 보유주식 매각 관련 신주(공개·증자) 공급규모 확대,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의 매각 확대, 민영화 추진 관련 금융주 1조 2,000억원 내외를 매각하며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민영화 대상 금융기관의 정부 보유지분과 한국통신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개와 증자를 통한 신주 공급규모는 5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공급하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관리번호 : DA0130415

쪽 수 : 102

생산년도 : 1991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1991년 9월 재무부가 작성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의 요약 보고와 참고자료, 관련 문답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이다. 주식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관리방안,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관리, 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본문보다는 참고자료와 문답자료가 방대하고 구체적이다. 참고자료에는 1990년대 당시 증권시장의 내부사정과 제도의 운영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약 88쪽의 문답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문답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6개의 항목은 개방 여건 및 개방의 영향, 외국인 투자대상, 외국인 투자한도, 외국인 주식투자 관리방안, 외국인 주식투자 관련 세금, 기타의 항목이다. 질의응답 중에서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주식시장 개방의 실익이 외국계 증권회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돌아갈 우려는 없는가”, “국내 주식시장 개방은 내국 투자가의 해외주식투자 허용과 병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개방 시 추정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규모는?” 등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응답문 역시 대중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1991년에는 1990년 OECD 비공식 경제정책협의회 회의를 유치하고, OECD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1991년 4월 OECD 가입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외환, 금리, 자본시장의 자율·개방의 요구는 거세어졌으며, 사실 증권시장의 개방계획은 198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른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은 외국인의 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국내외 증권기관의 사무소 간 교류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에서(1981~1985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1985년)하고 국제수지가 1980년대 후반에 흑자기조로 전환되자,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내증권의 해외발행과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전반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허용, 외국증권의 국내 발행 및 상장을 추진하여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 단계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었다.

1991년에 작성된 이 기록물은 1989년부터 간접 개방⇨증권산업 개방⇨주식시장 개방의 단계로 일정을 세우고 있다. 1989~1990년에 외국인 펀드 및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개방을 확대하고, 1991년에는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권회사의 신설을 허용하여 증권산업을 개방하고, 1992년에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직접 주식매매를 허용하는 주식시장 개방의 추진계획이다. 1991년 5월 외국인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간접 개방 형태에 의한 주식투자 1.6%, 상장된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 1.7%의 합계로 약 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주식시장 개방의 기본방향을 3가지로 축약하였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개방이다. 1992년으로 예정된 주식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개방수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 투자한도의 설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이다. 셋째, 국내 수용태세 정비이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증권 관련 제도의 선진화 도모(「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국내증권 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 경쟁력 강화, 금리 및 외환 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다.

주식시장의 개방수준을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한도는 모든 상장주식을 외국인의 투자대상으로 허용하고 개방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통화 및 증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종목당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 및 1인당 한도를 설정 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며, 외국인의 적용범주를 국적과 거주성에 두었다.

단기금융시장 발전방안

관리번호 : DA0130439

쪽 수 : 38

생산년도 : 1992

생산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이 기록물은 1992년 7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와 투자금융경제연구소, 전국투자금융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2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주제로 같은 시기에 전문연구소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물로 추정된다.

KDI의 보고는 기능, 성장, 현황, 자유화 및 개방의 기대효과, 자유화 및 개방의 여건 검토,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단기금융시장의 자유화, 개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실시에 앞서 전문가집단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물이다.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와 현실, 발전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기초에서 단기금융시장의 보폭을 정하는 검토의견으로 의미있는 자료이다.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소위 ‘화폐시장’으로 불리워진다. 1992년 당시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 재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상업어음 매출시장, 무역어음시장 등 8개의 개별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0년대 말 2조 5,446억원에서 1991년 말 5조 6,608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 단기금융시장은 일본, 독일보다는 비중이 크지만, 기업어음시장과 양도성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다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에서 하부 시장별로 거래권한(Dealership)이 제한되어 있는 한편, 발행금리가 규제되어 역마진을 감수한 채 인

수함에 따라 유통시장이 미성숙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8개의 개별 단기금융상품의 시장에 대한 현황분석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의 기대효과로 첫째,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의 효과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의 금리의 움직임이 시장신호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콜시장 등이 대외 개방될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원화 조달창구가 확대되어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용이하게 될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의 비중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금융시장에 유통시장 참여를 통하여 국공채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 제고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금리가 하락하며 금융상품 간 금리격차가 축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에 따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기금융시장 자유화를 위해서는 자금초과 수요현상이 진정되고 가계 및 기업의 여유자금이 증가하며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유통 금리기준이 되는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 육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KDI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인식이 수익성, 유동성 및 안전성이라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익성에만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융상품들 간의 대체성이 미숙하고, 적용되는 금리 규제때문에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의한 실질적인 단기금융시장 금리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금융시장의 왜곡이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방향으로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정보를 수집, 조사,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정보망이 필요하고 금융국제화 추세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능력의 확보와 네트워크와 계약의 확보, 스왑 옵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

권시장의 육성과 결제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투자금융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두 번째 문서의 구성도 KDI와 동일하다. 단기금융시장의 기능, 현황, 발전방안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앞선 문서보다 수량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발전방안으로 유통시장의 발전 도모,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 자본시장·외환시장과의 연계 강화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단계로 금리자유화와 화폐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1단계(1992년 하반기~1993년 중반기)에는 금융기관 간 시장의 정비 및 확충,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1994~1996년)에는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추진, 시장 간 연계성 증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3단계에는 어음매매시장을 신설하고, 1997년 이후에는 전 단계의 자유화가 완료되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관리번호 : DA0130421

쪽 수 : 62

생산년도 : 1992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철은 재무부 보험국이 시장개방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와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자유화 방안과 영문 요약본>, <업계와의 협의결과>, <영문 드래프트와 장관의 연설문>, <작업방식 매뉴얼> 등 총 7개의 보험시장 자유화 방안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록물은 1987년부터 보험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1992년 당시 15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진출하였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사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조치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험시장 개방현황과 평가, 개방 관련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을 보고하고 있는데, 보험시장 개방의 영향과 현안 문제점을 1992년 상황에서 개관할 수 있는 분석적 보고로, 정책 당국의 고민과 대안 모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성과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진출을 허용하며, 일단 진출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는 내국사(內國社)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또한 이 기록물에 첨부되어 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고소득층 대상의 보장성 보험의 판매를, 손해보험은 국내 소재 외국 기업체의 배상 책임보험 등 기업보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보사 지점만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을 뿐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외국 보험사의 시장 잠식은 나타나지 않고, 그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및 권익보호가 향상되

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의 도입과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제휴 판매 등 보험 판매방식이 다양화되고, 신상품에 대한 개발과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등의 효익이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 이 기록물철에는 〈국내외 업계와의 주요 협의결과〉(1992. 6. 23), 〈국내 진출 외국보험회사와의 간담회〉(1992. 6. 24), 〈Insurance Market Liberalization Plan(Draft)〉, 〈Keynote Speech by Director-General Lee Jung-Bo〉, 〈보험분야 자유화 방안 검토작업 추진경과 및 작업방식〉이 수록되어 있으며, 두 편의 영문자료가 들어 있다. 또한 1992년 6월 23일에 논의된 보험국장, 보험감독원국장, 생손보험회장의 협의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여 재보험산업 자유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2단계(선박보험, 1995년 4월 이후) 자유화계획을 1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지점에 불과한 외국사를 협회 정회원으로 대우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개방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해외 소재 보험사에 원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 대사관과의 협의도 추진되고 있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보고

관리번호 : DA130547

쪽 수 : 88

생산년도 : 1990~1995

생산기관 : 금융위원회

이 기록물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안에 대한 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약 7년간(1989~1995년)의 각계 전문가와 실무부서가 검토한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검토의견과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신경제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이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된 논의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을 강화할 것인가, 정부(재무부, 재정경제원)가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예금보호제도를 수립할 것인가의 2가지 대안을 둘러싼 것이었다. 본 기록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재무부 등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 기록물에는 실제 1995년 8월 법령이 공포되기 직전까지 논의가 구체화되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993년부터 예금보험제도를, 한국조세연구원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995년 초 발표하고, 5~7월 사이에 재정경제원 보고를 통하여 1995년 8월 법령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이 기록물에는 〈일본의 예금보험제도(1990, 신용관리기금 기획조사부)〉의 완역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1987년 5월에 발간된 〈일본예금보험제도 개요〉라는 문서를 1990년 완역한 문서와 일본 「예금보험법령」의 복사본이다. 일본은 금융

기관 사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 보호의 분리를 목적으로 1971년 4월부터 「예금보호법」이 공포되었고, 예금보험기구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예금보험제도의 가입 금융기관, 가입금, 보험금, 자금원조, 보험 관계의 성립과 보험료,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예금보험법」, 「예금보험법 시행령」,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예금보험기구 업무방법서」, 「농수산업협동조합 저금보호법」,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 시행령」,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일본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1994. 2, 한국금융연구원)은 1994년 2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로, 예금보험의 운영주체, 보험대상기관, 가입형태, 대상예금, 기금의 조달형태, 기구, 예금보험료율의 형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금융연구원은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의 2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정부 주도의 예금보험기구가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산하, 재무부 산하, 기존의 신용관리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3가지 안을 각각 비교하고,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부 산하에 독립된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하며, 자금지원, 사고기관의 처리 및 감독기능을 보유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사후적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은행감독원은 사전적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포괄적 보험제도를 유지하며 자율 가입보다는 강제 가입형을 도입하며,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을 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며, 요구불, 저축성예금 및 신탁계정을 포함하며 외화예금, CD 및 동업자예금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사전적 보험료 납부 및 정부보조로 보험기금을 조달할 것, 부분보험제도를 채택하여 예금보험의 부보한도는 1,500~2,000만원으로 할 것, 설립 초기에는 고정료율을 적용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 9월 말 우리나라의 저축성 예금구좌의 97.4%가 1,000만원 이하이나 금액기준으로는 48.4%에 불과함을 기초로, 부보한도를 높이면 대량 인출사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1994. 6, 재무부)〉은 예금보험제도의 개요, 해외사례, 우리나라 현행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다루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1934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실제 금융기관의 파산을 경험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미국·영국·이태리·인도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선진국이 1960년 이후 예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대부분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며,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미국의 경우가 있다.

금융국의 예보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① 설치 근거 : 설치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 기금은 금융기관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정부출연 가능
- ② 부보범위 : 은행권에 한정하며 모든 예금(신탁 포함, CD 동업자예금·예화예금 제외)을 대상예금으로 함
- ③ 보험료 지급한도 : 예금보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운영하되 우선은 1구좌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④ 보험료율 : 예금의 0.02%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0.1%까지 확대
- ⑤ 예금보험기구의 업무
 - 운영주체 :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공익법인
 - 업무범위 : 예보업무 이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사고기관 정리기능 부여
 - 가입방식 : 가입 의무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1987. 6)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1950년 이후 한국은행과 재무부와의 관계가 수직화되어 자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능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금융감독의 권력분립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사전적 감독은 완화시키되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사후적 감독은 오히려 강화시켜 재무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안이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무부에 사후적 감독권을 대폭 이양하여 금융감독의 분업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당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체계와 업무감독 및 검사체계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 검토 및 도입방안〉(1995. 6, 국민저축과 금융정책실)은 재정경제원의 전담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1994년 12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재정경

제원으로 통합되고,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 내에 「예금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준비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1995년 8월 9일 재정경제원은 실무진이 마련한 「예금자보호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그 직전인 1995년 6월 작성된 국민저축과 금융정책실의 보고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1995년 7월 재정경제원의 도입 방안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년 전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출한 운영주체·방식·범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보험료 지급한도만 예금자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 7월부터 실시한 공청회도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말미에는 금융정책실의 업무경과 보고서와 법안 초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95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1995년 1/4분기 중에 해외사례 수집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 2/4분기 중에 관계 부처 협의, 정책협의회, 공청회를 개최, 3/4분기 중에 법률안을 확정, 제도화할 예정이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보완방안〉(1989,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은행감독제도 상의 예금보호장치, 사후적 직접적 예금자 보호장치로서의 예금보험제도,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제시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은 예금자 손실보전을 위한 사후적 예금자 보호장치의 강구와 기존 감독기관과의 검사, 중복 회피를 위해 특별법인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에 독립 공익법인으로 별도의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는 제안은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은행감독원이나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외환제도 개혁계획

관리번호 : BA0790610

쪽 수 : 84

생산년도 : 1994

생산기관 : 재무부

1993년 신경제5개년계획 상 금융개혁의 일환인 외환제도 개혁안은 규제완화, 자유화, 선진화의 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이 기록물은 박재윤 재무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지난 30년간의 외환제도를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코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WTO 출범으로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대응할 외환제도 개혁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1994년 2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의 방안 제시와 실무진의 검토, 제도 수립 등 정책결정의 전달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개혁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의 검토자료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1945~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1964~1980년),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990년)로 변화해 왔고, 1990년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어느 정도 정책당국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유변동환율제도와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1995년은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생산기지 확충 등 기업경영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환제도의 개혁이 시급하였지만, 제도개혁에 따른 외자유입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 기록물에서는 외환제도 개혁을 경상외환거래 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로 구분하고, 성공을 거두려면 금리 및 물가안정, 건전재정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되고, 금리자유화 등 국내 금융이 자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 및 외환시장의 확충과 외화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경상외환거래 자유화는 향후 5년간 3단계(1995년 1단계, 1996~1997년 2단계, 1998~1999년 3단계)로 점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준인가적 인증제를 단순 보고형태의 신고제로 전환하고 소액 지급에 대한 실수요 증명업무를 면제하는 등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관련 경비지급은 자유화하며, 해외 사무소 설치 및 신용카드 사용 자유화 등 자유화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자본거래는 외자 부족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상업차관,뱅크론 등 외자유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했으나, 1980년대 중반 국제수지 흑자전환 이후, 외자유출거래 제한은 완화되었으나 상업차관 등 외자유입 거래는 억제되어 온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자유화하고, 기본적으로 원칙 자유, 예외금지 형태인 네거티브시스템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 자산운용을 증권투자, 해외예금, 해외 신용공여, 부동산 투자 등에서 자유화하고 대내외 증권발행을 자본시장 국제화에 발맞추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해 원화 - 외화 간 현물환 거래 결제방법을 국제관행인 제2영업일 결제로 변경하고, 1995년까지 환율변동 폭을 확대하며 1997년까지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추진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여건의 변화와 대책 (장기저축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관리번호 : DA130528

쪽 수 : 111

생산년도 : 1995

생산기관 : 재정경제원

이 기록물은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예고되면서, 저축의 이탈과 유동성 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루고 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은행의 기획팀, 한국은행, 조세연구원 등 담당자 사이의 비공식적 실무간담회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축적 추이, 저축동향, 금융저축의 여건, 대책방향 등 장기저축 증대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록물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성장은 투자재원을 지원하면서 실물부문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아직 저축수단으로서의 금융자산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낮고 저축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축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국내 투자를 충당하기 어려워 경상수지 적자로 회귀될 위험이 있었다. 내구재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3차례에 걸친 금리자유화, 금융자유화로 은행 간 수신경쟁이 나타나고 고금리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산운용이 고금리 고위험상품에 편중될 위험이 있었다. 저축자금이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못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

한편, 기업의 투자수요가 팽창함으로써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방식이 모색되고 개인의 금융자산 수요도 다양화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할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였다. 국내저축만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 과제였다. 경제주체의 소비를 합리화하고 여유자금을 장기 금융자산 보유로 연결하기 위하여 5가지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첫째, 저축심리 제고 및 소비심리 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제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실물자산에 의한 재상증식의 기회를 제거하고 소비자금융을 제한하며 금융기

관 이용을 합리화(전산망 구축, 가계수표 이용 확대, 예금 관련 자료의 과세자료로의 이용 차단), 소비 합리화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의 개발이다. 경품부 예금상품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의 가입요건, 불입한도를 인상하며 세제지원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허용(MMC, MMMF, RP)하고 타 금융기관 상품과 연계(은행, 증권, 보험회사 간 연계)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인데, 이는 1996년 이후 금융저축 추이를 엿보며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중에는 장기저축에 연분연승 과세방법을 허용하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은행의 5년 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환급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넷째, 증권시장의 활성화였다. 우선 채권발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무보증 회사채발행을 유도하고, 국공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기간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무엇보다 발행주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주기를 장기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국공채 및 회사채 인수단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대출한도에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결과의 평가치를 고려함)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경영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저축에 대한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저축동향과 금융저축 증대방안

관리번호 : DA0130513

쪽 수 : 115

생산년도 : 1995

생산기관 : 재정경제원

이 기록물은 1995년 4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이 작성한 <최근의 저축동향과 금융저축 증대방안>이라는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은 실질금리의 보장, 소비생활 건전화 유도 등으로 저축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전체 금융기관에게 저축증대방안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금공급자, 수요자의 다양한 성향을 충족시키도록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증권기관에게는 여유자금이 장기자금으로 머물 수 있는 유인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는 수신 기반의 강화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1994년 당시 저축율은 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늘어나는 투자자금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투자재원의 외부조달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자립기반 조성이 시급하였다. 민간저축율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하자,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다.

【표 15】 GDP와 저축율의 증가율 추이

(단위 : %)

부처별	1986년	1988년	1990년	1992년	1993년	1994년
GDP	11.6	11.3	9.5	5.1	5.8	8.4
소비	8.2	8.8	10.1	6.8	5.3	7
(민간)	8.1	9	10.7	6.6	5.1	7.4
저축율	33.7	39.3	35.9	34.9	35.2	35.2
(민간)	27.7	31.5	27.4	27.1	26.7	25.9
투자율	29.2	31.1	37.1	36.8	35.2	36.1

* 출처 : DA0130513, 10쪽.

【표 16】의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간접금융을 통한 조달 비중이 전년대비 1994년에는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예금은행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사금융을 포함한 기타의 비중이 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접금융의 비중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은 1994년에 38.8%로 1992년보다 낮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조달이 15%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은행, 사채, 회사채 등 차입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 등 자기자본의 확장을 통하여 조달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아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기업의 자금조달

(단위 : 억원, %)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자금조달	548,887	100.0	649,816	100.0	878,775	100.0
간접금융	199,115	36.3	203,732	31.4	393,473	44.8
예금은행	83,130	15.1	84,865	13.1	183,666	20.9
비예금은행	115,985	21.1	118,867	18.3	209,807	23.9
단자	△2,195	△0.4	15,396	2.3	38,641	4.4
보험	21,143	3.9	20,159	3.1	20,615	2.3
신탁	53,848	9.8	24,492	3.8	70,604	8.0
기타	43,190	7.9	58,819	9.1	79,948	9.1
직접금융	227,127	41.4	343,770	52.9	340,700	38.8
국공채	5,710	1.0	22,274	3.4	9,066	1.0
기업어음	41,825	7.6	90,167	13.9	44,050	5.0
주식	71,773	13.1	95,416	14.7	131,982	15.0
회사채	66,163	12.1	94,523	14.5	126,610	14.4
해외 차입	25,271	4.6	△14,535	△2.2	40,368	4.6
기타*	97,374	17.7	116,849	17.99	104,234	11.9
기업신용	48,777	8.9	58,391	9.0	57,978	6.6

* 출처 : DA0130513,13쪽.

기업의 투자자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국내저축이 확대되어야 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저축자금의 유입이 발행시장을 통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유통시장 위주로 발달하여 기업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국내저축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저축 증대방안의 모색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었지만, 저축증진

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고충이 잘 나타나 있으나, 실무차원의 대안 제시는 미약하다.

제시된 대책은 금융저축 분위기의 조성, 실질금리의 보장 및 실물자산에 의한 재산증식 심리의 불식, 소비생활 합리화 유도 및 금융소득 세제에 대한 홍보 강화, 장기저축상품의 개발, 변동금리부 장기 예적금 도입, 저축장려금부 예금상품 도입,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상품성 보완, 불우계층을 위한 세금우대저축 도입, 증시 저변의 확충, 무보증 사채의 확대를 유도, 배당제도 개선,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및 신뢰성 제고, 은행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당위적인 목표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Chapter II

31

금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대책 (세법상의 저축공제제도에 의한 세법예금방안)

관리번호 : EA0023132

쪽 수 : 27

생산년도 : 1967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

이 기록물은 저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저축공제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통령 재가 문서를 다루고 있다. 경제과학심의회(남덕우 위원장)의 의결내용으로, 제24회 28호 금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대책, 29호 세법상의 저축공제제도에 의한 세법예금방안이 처리되었음을 알려준다.

처리 내용은 1967년 11월 23일 대통령 재결 사항을 그대로 전 위원 및 사무국에게 공람시킬 것을 명시하고, 이어 재정금융담당관이 사무국장에게 본 건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재결 결과를 공람하게 한다는 내용의 부전지가 실려 있다.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24회 본회의에 심의·의결한 사항을 보고한 기록물에는 1967년 10월 25일 총 8인이 참석하여(위원 7인, 주요한(朱耀翰), 최규남(崔奎南), 박동묘(朴東弔), 임송본(林松本), 남덕우(南惠祐), 이창열(李昌烈), 이종진(李鍾珍), 사무국장 김정무) 재가 후 관계 부처에 시달하고자 한다는 토의 결과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사채가 성행”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가 대통령의 친필로 기록되어 있다.

1962~1966년간 평균 국내저축률은 GNP 대비 6.7%로 평균 16.9%에 해당하는 투자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외국원조, 차관 등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저축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축공제제도가 모색된 것이었다. 정부가 이미 실시하였거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실시 예정인 저축증대 대책에는 조세정책면에서는 저축성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재투자자를 촉구하기 위한 특별상각제도, 법인의 특정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법인의 배당소득보다 유보 소득을 우대, 사치적 소비품 및 수입품에 대한 물품세 혹은 관세율의 인상 및 과세품목의 확대, 월 3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주택금고예금에 가입할 경우 기세금의 일정비율(과세액의 10% 한도

내)을 납세액으로부터 공제, 부동산 투기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이 강구되었고, 금융면에서는 파격적인 금리정책, 복금부(福金附) 정기예금제도의 개선, 국민저축조합을 통한 반강제 저축, 금융기관 예금 흡수 배가운동 등이 모색되었다.

저축공제제도는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예금 감소에 대비하여 새로운 저축 유인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고금리에 의한 저축증대정책을 세법에 의한 저축증대 방안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액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의 신규 저축 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소득이 1만원인 사람은 700원을 납세해야 하지만, 저축공제제도에 의거해서 소득세의 10%를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의 5%인 500원을 납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납세액은 200원이지만 저축액은 세감 수액의 2배인 1,000원으로 증가되므로 실질적으로 저축이 증대한 것이다. 제도 시행에 의한 예금수입을 독립 계정 하에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용자재원으로 사용하며, 용자재원을 이용하는 대신 예산상의 정부용자액이 감축하면 예금에 대한 금리비용을 대출 금리로 치환하여, 부득이한 차액만을 정부가 보조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발상이었다.

이로써 세수입은 감소하지만 감소액보다 많은 저축이 발생하고, 재정수지 균형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50~100억원의 잠재적 저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별로 소득의 10% 저축운동을 전개하면 그 효과가 한층 더 확실해 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예상하였다.

【표 17】 공제율(‘세법상의 저축공제제도(시안) 제안 설명’)

(단위 : %)

소득	6개월	1년
8,000 ~ 15,000	7.0	50.00
20,000	8.5	41.18
30,000	10.7	32.71
40,000	14.3	24.48
50,000	18.4	19.02
60,000	21.2	16.51
70,000	24.6	14.23
80,000	27.1	12.92
90,000	29.7	11.78
100,000	31.7	11.04

* 출처 : EA0023132, 17~18쪽.

이 기록물건에는 1966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구성비율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득별 인원수, 구성비, 소득금액, 납세액, 평균 실효세율의 통계표가 제시되어 있어 소득분배의 상황과 세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의 추진을 위한 지시

관리번호 : DA0130374

쪽 수 : 118

생산년도 : 1990

생산기관 : 금융위원회

이 기록물은 제2금융권 단기 고수의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논의과정과 실무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금리와 다양한 금융상품별 조건, 통계자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금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자금 조달자금, 실세 금리의 추이, 금융연관비용, 금융자금 대출금리 변동 추이, 금융기관별 수신점유율, 부문별 통화공급 실적 등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 지표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90년 당시 단기 수신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시중자금은 단기 부동화 경향이 나타나서 제2금융권 금리와 은행예금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권 간의 불균형 성장이 우려되고 있었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들은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4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2금융권의 금리를 1% 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발표준비를 하였다. 기본방향은 은행과의 금리 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특히 1개월 이하 단기 수신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단기 고리의 왜곡된 금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수신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 경감분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은행과 연동시킴으로써 제2금융권 대출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였다.

제2금융권 실세금리를 1990년 7월 2일 이후 최고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하고 신탁,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등 각 기관에 조정된 최고금리를 시달하였다. 또한 금리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불건전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수신 양립처리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조달 비용 상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표 18】 1·2 금융권의 수신금리 비교

(단위 : %)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은행(정기예금)	4.0	6.0	6.0	10.0
제2금융권(CMA)	10.1	13.6	14.1	

* 출처 : DA0130374, 205쪽.

【표 19】 1·2 금융권에 대한 기업의 수신 비중과 차입 의존도 비교

(단위 : %)

구 분		1987년 말		1988년 말		1989년 말		1990년 말	
		수신비중	차입의존도	수신비중	차입의존도	수신비중	차입의존도	수신비중	차입의존도
은행(정기예금)		37.5	11.85	36.6	11.85	33.5	11.19	32.6	11.2
제2 금융권	단자	62.5	12.46	63.4	12.41	66.5	13.30	67.4	13.5
	전체		47.8		49.2		49.7		51.2

* 출처 : DA0130374, 205쪽.

수신금리 인하방안을 요약하면, 평균 1% 수준으로 인하하되 1개월 이하 단기수신 금리를 대폭 인하(최고 3%)하여 은행과의 금리격차를 축소하는 동시에 여신금리도 1% 인하하였다. 여신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연간 4,000억원이 경감되었다.

1단계 금리자유화

관리번호 : DA0130408

쪽 수 : 285

생산년도 : 1991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철은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1991~1997년)의 추진계획 중 1단계 조치의 시행방안을 재무부 이재국이 정리한 자료이다. 재무부가 1988년 11월에 보고한 <금리자유화 및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개편계획>,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당정협의 자료>, 이재국이 작성한 홍보계획과 보완대책, <실적배당상품 수익률 균형도모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리자유화 Simulation> 자료에는 자유화 시에 예상금리 수준과 자금이동 전망과 대책이 다루어지고 있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의 본격적인 추진이 발표되었으나, 금리상승과 수출부진 등 경기위축의 동향이 감지되자, 속도를 늦추어 1989년 하반기부터 창구지도가 실시되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1% 인하하였고 1990년 6월 28일에는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가 단행되었다. 전환사채발행금리(3년 이상)와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만 실질적으로 자유화된 상태에서, 국내은행에게는 금리가 규제되고, 외국은행 지점에게는 제도상 자유화된 금리범위 내에서 자율 금리운용이 보장되고 있었다.

【표 20】 부처별 일람표

취급 금융기관	금리자유화 대상	
	여신	수신
은행	- 당좌대출 - 상업어음할인 (반은 재할인 대상 제외) - 무역어음할인	- CD(5,000만원 이상, 91~180일) - 거액상업어음 매출(신설) - 거액무역어음 매출 (3,000만원 이상, 60~180일) - 거액RP(5,000만원 이상, 91일 이상) - 3년 만기 정기예금(신설)

취급 금융기관	금리자유화 대상	
	여신	수신
신탁	- 상업어음 할인 - 보증어음 매입	- 3년 이상 만기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 - 3년 만기 개발신탁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 기업어음 할인 - 무역어음 할인	- 거액기업어음 매출 (3,000만원 이상, 91~180일 이상) - 거액무역어음 매출 (3,000만원 이상, 60~180일)
상호신용금고	- 상업어음 할인	- 2년 이상 만기 정기부금예수금
상호금융(농수축협단위조합, 신탁, 새마을금고)		- 3년 만기 정기예탁금(신설)
증권회사		- 거액 RP(5,000만원 이상, 91일 이상)
생명보험회사	- 상업어음 할인	
전 금융기관	- 연체대출	

* 출처 : DA0130408, 67쪽.

금리의 직접 규제는 자금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저리로 배분하면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리의 경기 조절기능을 무력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외국은행 지점이 국내에 진출하여 금리를 자유롭게 책정함에 따라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더 이상 금리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자금에 대한 항상적으로 초과수요 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상승을 의미하였고,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정책 등 간접 규제 수단을 통하여 금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이 미비하므로 단기적인 충격을 감내할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여신금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단계적으로 자율화 하는 방안이 기본방향으로 채택되었다. 1991년 중에 1단계로 추진된 금리자유화는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1·2금융권의 일부 단기 여·수신 및 3년 이상 장기거치식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하되 한은 재할인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여수신 모두

자유화의 수준이 10%, 제2금융권은 여신 30%, 수신 50% 수준의 자유화가 달성되는 셈이었다. 여신은 은행 당좌대출 및 상업어음 할인, 단자 등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연체대출 등을, 수신은 1·2금융권 단기 거액시장성 수신상품과 2금융권 3년 이상 장기 거치식 수신을 대상으로 하며 채권은 만기 2년 이상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였다.

2단계(1992년 하반기~1993년 중반기)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여신금리 자유화를 기간 중에 여건을 보면서 추진하되 수신의 경우 은행의 경영수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고 수신의 장기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장기 수신금리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은행은 여신 75%, 수신 30%, 제2금융권은 여신 100%, 수신 65%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표 21】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요약

구분	금리자유화 대상		
	여신	수신	채권
제1단계(1991년 中)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수신 거치식 수신금리를 자유화	- 은행 당좌대출 - 은행 상업어음 할인 (한은 재할인 대상 제외) - 단자 등 기업어음·무역어음 할인 - 연체대출	- 단기·거액 시장성 수신 상품 • 은행 CD • 단기 등 거액기업어음·무역어음 매출, 은행 거액 상업어음 매출 • 증권 등 거액 RP - 1·2금융권 3년 이상 장기 거치식 수신	- 2년 이상 회사채
제2단계(1992년 하반기~1993년 中) 1988. 12 금리자유화 조치의 실질적 자유화 완료	- 1·2금융권 2년 이상 장기여신(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 제외)	- 1·2금융권 2년 이상 장기 수신	- 2년 미만 회사채 - 2년 이상 금융채
제3단계(1994년~1996년 中) 금리자유화의 사실상 완료단계	- 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	-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 2년 미만 수신 • 장기 → 단기 순으로 추진 - 단기 시장성상품 금리자유화 폭 확대 • 만기 및 금액 기준 하향 조정 -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 시 상품 (예 : MMC) 도입	- 2년 이상 금융채 - 통화채
제4단계(1997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추진		- 전 단계에서 자유화가 완료되지 않은 단기수신 및 요구불예금	- 모든 국공채

* 출처 : DA0130408, 281쪽.

3단계(1994년~1996년 중)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장기·거액 ⇨ 단기·소액 순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금리자유화의 주요 부분을 사실상 완료하는 것이었다. 은행의 경우 여신 100% 수신 70% 수준, 제2금융권은 여신 100% 수신 90%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4단계(1997년 이후)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 전면적인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된 직후, 금융시장의 동향(1991. 11. 21~25)을 살펴보면, 시장금리는 안정 추세를 보이고, 여수신금리가 2% 내외에서 상승하였으며, 꺾기 감소, 통화관리강화 등 특수요인에 따라 일부 여수신의 증감이 있을 뿐 큰 변동은 없었다.

34

3단계 금리자유화 및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 방안

관리번호 : DA0130490

쪽 수 : 116

생산년도 : 1994

생산기관 : 재무부·한국은행

이 기록물은 정책금융 및 통화금융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금리자유화 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1994년 말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는지, 자유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와 현안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금리자유화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재무부, 한국은행 등 재정금융정책의 당국과 금융권, 그리고 민간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특히 약 2년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앞당겨 완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한국은행과 재무부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97년 금리자유화의 전면 실시를 앞둔 최종 점검단계인 2년간의 3단계 금리자유화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단기 소액자금까지 금리를 자유화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다.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의 빠른 진전에 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다. 수신금리는 은행의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고, 여신금리는 한국은행 자금지원대상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재할인, 지준,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규제 방식의 통화관리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금융기관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금리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3단계의 수신금리 자유화는 정기적금 등 2년 이상 3년 미만의 상품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1단계 46% 2단계 15% 3단계 6.3%(1994~1995년, 잔여 27.7%), 4단계 4.9%의 비중으로 달성할 계획이었다. 여신금리는 1994~1995년 중에는 한국은행 자금 지원대상 정책자금으로 주로 중소기업 대상(운전자금, 설비자금, 농수축산 자금 등)이며,

1994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5.3%(1단계 15.2%, 2단계 74.4%)에 이르렀다(95쪽).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간접규제 방식의 통화관리의 정착이었다. 재할인 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높이고, 지급준비율 제도를 정착하며,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을 갖추는 것은 금융정책의 기반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이었다.

이에 금통위 간담회 자료(1994. 11. 24)인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의 일부 조기 시행 및 통화관리방식 개선방안>(자금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별 은행저축예금의 구성과 현행 연 8.5~9%로 고정되어 있는 여신금리를 프라임레이트(연 8.5~9.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03쪽).

한편, 통화관리 정책면에서는 우선 총액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은행의 over loan 방지 및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등 여신운용의 준칙 확립을 위해 은행별 한도 배정 시 각 은행의 단기자금 포지션과 주식투자 또는 소비성 가계대출 등 불요불급한 여신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증권 발행과 함께 유동성 환수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RP(환매채) 매매조작을 정상화하여 미세 조정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34쪽), 정책금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록물에는 현안에 대한 기초통계와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리자유화에 따른 실무차원의 고민을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방안

관리번호 : DA0130649

쪽 수 : 23

생산년도 : 1997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1997. 6), 여건 성숙정도와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재무부 장관 결재 보고자료이다. 이 시기는 한보(1월), 삼미(3월), 진로(4월), 대농(5월), 한신(6월)의 연쇄부도가 시작되고, 7월부터는 태국, 인도네시아의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재무부 금융정책실은 과연 위기의 조짐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금리자유화 추진현황, 추진여건, 시행방안, 시행시기, 예상효과의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리자유화 추진현황 및 계획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고, 수신상품의 개요가 정리된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결재보고서는 약 6년간 금리자유화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요약문으로 IMF 외환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당시 재무부 핵심부서가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금리자유화의 의지가 그만큼 투철하였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기록물은 금리자유화의 추진여건은 이미 성숙하였으므로, 장단기 금리 간 불균형 해소,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자금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수시 입출식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보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불안심리가 금리자유화 추진에 다소 제약이 될 수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주가·환율 등이 안정세를 시현하는 등 금리자유화 추진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실물 측면에서 성장을 6% 내외, 물가 4%대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재정경제원이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의 안정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

관리번호 : BA0889015

쪽 수 : 38

생산년도 : 1982, 1988, 1989, 1992, 1993

생산기관 : 금융부동산 실명단

이 기록물은 1982년 이후 1993년까지 금융실명제에 대한 각종 문서를 발췌 수록한 것이다. 지하경제의 축소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응능원칙(應能原則, ability-to-pay principle)을 따라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의 선거공약일 정도로 1980년대 초부터 시대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었다.

1982년 · 1988년 · 1989년에 작성된 금융실명제 추진방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 준비사항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와 금융거래 정보의 전산화,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982년 기록물에서도 ‘1983년 1월, 7월 이후에 실명화 하는 경우’ 등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기록물에는 토지기록 전산화와 종합토지세제를 정착시킨 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단계적 실시안이 검토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전산화 작업, 관련 법령 개정,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등 보완대책 강구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3단계 사전준비 작업계획이다. 이로써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은 사실상 10여년 이상 준비되어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서 작성한 농수축 협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현황, 연도별 위탁자 계좌금액 현황, 여신관리자금 개요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한 경제사회 발전구상>에서는 1993년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금융실명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조직이 가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2월 9일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에게 보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조정관실의 〈21세기를 향한 경제사회 발전구상(중간보고) 검토 요청〉 문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에게 장기 비전과 효율적인 대응정책에 대한 연구작업을 의뢰한 것이다. 그 중 재산세의 강화, 금융실명제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그리고 소득 및 분배 개선, 토지 공개념의 확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제의 단계적 실시 부분이 발췌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4쪽의 요약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직전에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종합소득 + 금융자산소득 + 기타 금융소득을 새로운 종합과세 대상으로 하면, 1992년 소득세 신고자 88만명의 9배 가까운 800만명으로 신고대상자가 증가할 것이고, 사업자·근로자를 포함하면 약 1,200만명으로 납세자가 증가할 것이며 전산처리할 소득자료를 과세하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전면 개편에 앞서 사전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는 역시 전산시스템에 대한 역할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 문제〉의 요약문에서는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지만,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여건조성을 위해 비실명이자에 대한 차등과세 강화(64.5%, 일반 21.5%), 신용카드 확대 등을 통하여 실명거래의 관행을 축적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등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며, 전산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Chapter II

37

금융실명제(1993-3)

관리번호 : BA0889058

쪽 수 : 218

생산년도 : 1992

생산기관 : 금융부동산 실명단

이 기록물철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해 준비한 1년간의 검토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같은 목차와 내용이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와 자가상승률, 주가변동, 물가에 대한 통계표도 포함되어 있다. 오래동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요약보고서와 〈금융실명제 실시문제〉라는 동일 제목으로 보고된 4개의 보고자료와 일정표, 차명주식의 실행 전환시 과세문제 및 법령위반 노출사항, 〈실명제를 법률 개정없이 시행하는 방안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실명제의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탐색하며 시행의 적절한 시기를 검토한 생생한 과정이 담겨져 있다.

- ◇ '82. 12 金融實名去來에 關한 法律制定
 - '83.1부터 일부 시행하되, 전면 실시는 '88. 1. 10이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유보』
 - 非實名金融資産所得에 대한 차등과세 확대, 實名에 의해서만 가능한 세금우대예금상품 확대 도입으로 實名去來 관행을 유도
- ◇ '91. 1. 1부터 실명제 全面 實施方針을 발표('88. 10)하였으나, 『經濟活性化對策』 발표 시 실명제 실시를 유보
 - 실명제 실시 유보에 따른 보완대책을 稅法 改正 時 반영
- ◇ '92. 3 각 정당이 『실명제 실시』를 總選 公約

【그림 9】 금융실명제 추진 상황
(BA0889058, 7쪽)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시 무기명, 가명, 차명 등을 없애고 자기명의로 거래하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는 간명한 것이었으나, 실명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과세와 종합과세의 차명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 등 절차적 보완이 절실했다.

1982년 이후 10년 넘게 실명제의 당위성에 집착했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는 당위성부터 재고하고, 198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온 추진과정과 현황 및 시행과정상 발견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표 22】 금융자산의 실명화 현황

(단위 : %)

금융기관명	1989. 12. 31 현재	
	계좌	금액
은행	98.0(98.9)	98.7(98.6)
증권	99.0	96.4
투자신탁	98.9	99.8
단자·종금	97.8	98.8
신용금고	99.8	99.8
기타	98.6	98.9
합계	98.2	98.4

* 출처 : BA0889058, 9쪽.

1990년 당시에는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⁹⁾과 증시자금 위축¹⁰⁾, 단기 투기성 예금의 증가 등 자금의 단기 유동화 경향,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 과소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사회분위기 이완 등이 우려되었다. 이에 실시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실명거래의 대상 및 범위로, 방법에 따라 자금이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클 수 있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앞 수표, 환거래 등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확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무기명채권, 증권에 대한 실명거래 방법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명기피자금을 흡수하여 국민경제에 유익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상품이 준비될 필요가 절실했다.

둘째,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범위의 문제이다.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어느 범위인지, 부당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정해야만 하였다.

셋째,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화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실명화된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

9)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은 1987년 14.7%, 1988년 27.5%, 1989년 32%, 1990년 20.6%, 1991년 12.8%에 이르렀다.

10) 주가지수가 1989년 12월 909에서 1990년 3월 837로 하락하였다.

인가가 관심을 모았다.

넷째, 실명제 실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나 실명제와 종합과세를 동시 시행하면 종합소득세 납세 인원 및 세부담의 증가, 행정부담 증가 등으로 전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서 종합과세 실시시기, 소액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정리되어야만 하였다.

요컨대 기존 경제질서에서의 영향 최소화, 자금의 해외유출 억제, 부동산 실물투기 방지, 증권시장 위축 방지, 금융저축 증대, 실명기피자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하였다. 1983~1989년의 실명거래 관행 유도기간을 거쳐, 1990년 이후 관련 제도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실시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였지만, 부분적 실시가 무기명, 차명, 가명을 이용한 돈세탁 등 금융부조리 및 사과의 발생 가능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는 한편에서는 실명제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가능하였다.

【표 23】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분리 실시 여부에 대한 장단점 비교

구분	분리 실시 주장	동시 실시 주장
내용	- 실명의무화 조치를 먼저 하고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된 후 종합과세 실시	- 실명 의무화 조치와 종합과세를 동시에 실시
장점	-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 실명 의무화 조치만으로도 금융거래의 건전화, VAT·상속세 등의 과표 현실화에 기여	- 실명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확보 (종합과세에 의한 실명 여부 자동 검증)
단점	- 정부의 개혁의지 약화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	- 조세저항 등 충격이 가중됨 우려 - 전산 등 행정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 우려

* 출처 : BA0889058, 75쪽.

금융실명제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고액 금융자산정보가 유출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며, 주식 위장 분산을 통하여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초과보유가 곤란해짐에 따라 경영권 유지 불안감 등으로 특정 계층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심하였다. 비실명 금융자산규모는 약 7조원(예적금 4조원, 주식 3조원), 실질적인 비실명 자산규모는 약 20~25조원에 달하였다. 1990년 준비단에서 추정하 바로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50%, 증권 10%, 은행·기타 4% 수준에

해당하는 약 10~15조원의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자금이동이 금융기관 간에 이동되면 중소기업 등에 자금공급 애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 예상되었으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산업자금 공급경로에 장애가 발생하고 해외로의 자금유출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에 정부는 약 10만부의 팸플릿을 금융기관, 행정의 말단부서인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4대 대통령 취임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금융실명제 추진일정 및 실명거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경과조치, 종합과세 실시방안, 입법절차 등에서 3가지 안이 부각되었다.

【표 24】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3가지 방안 비교

구분	방안 ①	방안 ②	방안 ③
내용	- 모든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 주식양도 차익도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 주식양도 차익은 원천분리 과세	- 이자·배당소득은 • 일정 범위 내의 고액만 종합과세 • 기타 : 분리·종합 선택과세 또는 분리 과세 ⇒ 점진적으로 종합과세 확대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후 과세 (분리 또는 선택)
장점	-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	-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	-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 - 고액금융소득자를 종합함으로써 국민정서에 부합 - 소득세 신고인원이 소폭 증가에 그쳐 행정부담이 적음
단점	-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자의 불편 증가 • 특히 주식양도 차익까지 종합과세하게 되면 증시가 장기 침체화됨	- 금융자산이 차별 과세되는 문제점과 - 증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방안 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종합과세 대상의 지나친 축소로 종합과세의 의미 축소 - 고액소득자들이 명의 분산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

* 출처 : BA0889058, 82쪽.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명령의 배경과 주요 내용

관리번호 : JA00000010

쪽 수 : 42

생산년도 : 1993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은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긴급명령에 의해 단행된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방향, 주요 내용, 관련 대책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명령과 기존 법률과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문답자료와 대통령령·재무부령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은 종전 실명법 보완이 불가피하였으나, 사안의 성격상 법 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이 불가피함에 따라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이미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의 세제부문계획에 따라 1995년 「소득세법」을 개정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5월 첫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공표하고 있다.

홍보자료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모든 금융기관 거래 시 실지 명의의 사용의무를 부여하며,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실명 전환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나, 실명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인출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어길 경우 중과세하겠다는 강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서 재무부가 중앙대책위원장과 금융실명제실시단을 설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며 부동산·자금 해외유출·증권시장·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고, 시행 후 2개월간 현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다.

39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발표

관리번호 : JA0000359

쪽 수 : 7

생산년도 : 1993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이 기록물건은 김영삼 대통령 통치 사료 19권의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 발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1항(“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표하고, 심의·승인을 위하여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①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 ② 정·경유착의 근원적 단절, ③ 분배정의의 구현, ④ 사회의 도덕성 합리화, ⑤ 건강한 민주주의, 활력 넘치는 자본주의, ⑥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의 서두에서 역대 정권이 약속하고 법까지 제정하고도 실시하지 못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는 보류하며,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요건 강화, 자금출처 조사의 조세징수 한도 내에서의 집행 등을 약속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대한 특별 긴급지원, 비상대책반의 설치·운용을 통한 혼란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관리번호 : BA0889110

쪽 수 : 98

생산년도 : 1993

생산기관 : 재무부

이 기록물철은 금융실명제 발표 1주일 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한 「금융실명제 : 현황과 대책」을 참조하여 재무부가 수립한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록한 문서로, 실명제 직후의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긴급대책의 수립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비은행권,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국제금융의 4가지 방향으로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현황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 1주일간 민간은 금융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관망하는 모양이었다. 민간의 현금보유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중개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예금도 감소하고 CD 만기일이 지나도 은행에 계속 예치하고, 차명계좌 중 일부는 변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인출하면서 만료일 직전에 대량 인출 가능성이 보였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세금우대상품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은행 간 시장금리 연동상품 도입을 허용하며 CD 발행 단위를 축소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명화하지 않은 차명계좌의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는 차명인의 소유를 인정하며, 실명 전환 시 소득세 소급 추징에 적용되는 과세대상 기간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 직후 예금은 축소되었으나 대출은 증가되었다. 사채시장의 퇴장과 비은행권 여신의 위축 등으로 대출신용이 증가하였고 위험도는 높아졌다. 부족한전자금의 23.2%를 사채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연구원은 건설업을 대표로 어음할인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비적격업체에게도 어음할인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급락주가 반등하고 고객예탁금은 실

명제 실시 하루만에 2,600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연구원은 실명 전환기간 2개월 거액 투자자의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주가 변동에 따라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면 주식 관련 신상품을 허용하고 투신사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연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투신사의 국고자금 및 한은 특유자금의 상환을 연장하여야 하고, ② 주가가 다소 하락할 경우에는 신용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융자한도 확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순매수 우위 제한을 강화하여야 하며, ③ 주가가 급락하면 증안기금 확대를 통한 주식을 매입하고 외국인 투자한도의 조기 확대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금리는 실명제 실시 직후에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70~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회사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고 채권 관련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시제도의 개선, 전문딜러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국공채 발행금리의 자율화, 채권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CD의 만기상환과 예금인출 증가가 예상되자, 중개어음 매입단위(5천만원)를 고려하여 국세청 통보대책 기준금액을 인상하며 만기 CD의 은행 재예치 시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투금, 종금 등의 위축이 예상되자, 비은행 금융기관 상품들의 최저단위가 대부분 3천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 통보대상 기준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이 신용금고에서 어음할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요건의 완화를 검토하였다.

보험시장에서는 대량 해약이 우려되었으나,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유지되었다. 보험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의 보완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자금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단기화되고 콜금리는 안정세였으나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였다. 자금운용의 단기화는 1993년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과 맞물려 금리 상승 혹은 금리 변동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혼란, 금리상승, 중소기업의 타격 등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낙관하였다. 한국의 금융실명제 실시는 런던, 뉴욕 등 해외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명제를 장기적인 호재로 생각하고 매수를 증가시켰다. 런던

증시에서는 한국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 증권이 12일 5~15% 하락하였으나 13일부터 회복세를 보여 17일까지 5~7% 반등하였으며 뉴욕증시의 코리아펀드도 회복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13일 40억원, 14일 88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신기반 확충 : 저축상품 세제우대제도의 지속(비과세, 세금우대저축의 존치, 저율 분리과세 저축상품의 가입한도 상향 조정), 신탁상품 만기의 다양화, CD발행 최저금액 조정 (현행 5천만원 → 3천만원)
- ②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 은행 GIRO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 가계당좌수표제도의 활성화(현행 일반가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영업자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신용카드 이용의 확충, 타행제도의 개선(CD기를 통한 타행 간 계좌이체 시행), 점외 CD/ATM기 설치 운영

예컨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비제도권 금융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상 애로를 겪을 수도 있고, 통화유통 속도가 하락하여 총통화 공급수준에 비하여 실질적인 유동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우선 금융시장 자금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자금인출 등으로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RP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인출 급증 시 증권금융의 시중은행에 대한 회전신용한도를 현행 6,000억원의 한도를 활용하기로 하며, 투신사 및 증권사의 은행차입금은 당분간 상환을 연기하고, 신용금고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단기자금을 지원하며, 제2금융권의 지급 애로가 발생할 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금리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게 확대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을 통해 1차로 3,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지방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1 (2-1)

관리번호 : BA0889161

쪽 수 : 203

생산년도 : 1994

생산기관 : 금융부동산실명단

1994년 9월 12일 재무부는 1차관보(임창열) 주재로 3개 감독원 부원장, 금융국장, 증보국장, 실명단 부단장, 감사관이 참석한 4차 금융감독기관협의회에서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가 실시되기까지 감사관실, 금융감독기관협의회의 안건과 은행감독원과 시중은행 사이의 질의응답, 법률자문 관련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록물철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자료는 1994년 7월,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은행예금 거래명세 통보제도 시행방안>(41~45쪽)이다. 이 기록물은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직전에 작성된 이 문서는 실명제 준비과정에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은행예금거래명세 통보제도에 대한 시행방안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금거래명세 통보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고객예금 부정인출 및 유용 사례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고객에 대한 거래내역 파악 편의 제공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증권에 대해서는 1984년 2월 이후 증권감독원 지침에 의거하여 거래발생 정계좌에 대하여 증권회사 부담으로 월 1회 이상 거래명세를 통보하고 있었다. 보험은 1993년부터 통보하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5억원 이상 계좌에 대해서만 잔액을 통보하고 있어서 고객예금의 횡령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자동이체나 현금카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었다.

감사관실의 대안은 월 1회 일정금액 이상 고액 예금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

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45쪽). 즉 1단계(1995년)는 5,000만원 이상(월 중 예금잔액 최고치 기준) 예금자에게 통보하며, 2단계(1996년)는 1,000만원 이상, 3단계(1997년)에는 전체 고객에 실시하는 단계적 실시안이었다. 당시 5,000만원 초과 계좌수는 2,315억원으로 전체 계좌의 0.4%, 통보에 따른 연간 비용은 특수은행 1억원, 일반은행 약 4억원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실명단의 의견은 차·도명 거래 방지, 금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보하는 것은 제도시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예금주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통보대상으로 하며, 통보대상은 금액기준 외에도 예금성격 등도 감안하여 선정하며 세금융대상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통보하는 것이었다(48쪽).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는 예금주별 통보 시 은행의 전산시스템 추가 등 별도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보방식을 예금주별 통보대신 계좌별 통보로 전환하고, 2천만원 이상 계좌에 대하여 반기 1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세금융대 저축상품은 모두 통보할 것을 검토하며 고객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통보하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여부를 재차 확인한 다음 제한적으로 통보에서 제외하고 제2금융권에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이 협의회 결과와 각 은행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은행감독원이 협의회 의견에 따라 제출한 세부 시행방안은 분기당 1회, 계좌별 통보방식을 채택하며, 5천만원 이상 계좌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사고 개연성이 적거나 통보실익이 없는 예금은 제외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1단계(1995년 1월 시행) 잔고 5천만원 이상, 2단계(1996년 1월) 잔고 3천만원 이상 계좌, 3단계(1997년 1월) 잔고 1천만원 이상 계좌 및 세금 우대저축이었다. 3천만원 이상 계좌 및 세금융대저축을 통보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보계좌수 과다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담 과중 및 통보계좌수의 현격한 차이에 의한 은행 간 형평성 등 문제점이 있어 통보대상 예금을 조정하며 거래명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통보한다는 방안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거쳐 1994년 9월 12일 개최된 4차 금융감독기관 협의회에서는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등을 위하여 은행

권에 대해서도 거래명세 통보제 실시를 추진하되, 은행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통보주기는 월 1회, 통보방식은 인별로 일괄 통보, 대상은 동의하는 고객에게만 통보하되 일정 금액 이상 예금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4년 11월 검사통합국 지도관리과에서 보고한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서는 통보대상 예금으로 논의된 세금우대저축 및 계좌잔고 3,000만원 이상의 기타 예금은 통보하는 계좌수 과다로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통보계좌수의 현격한 차이에 의한 은행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보대상 예금선정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의 종류와 금액산정에 대한 선정기준을 상세히 정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차 금융감독기관 협의회(1994. 12. 9)에서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시행방안과 불건전 금융 관행 해소방안을 안건으로 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은행감독원 안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통보대상을 수시 입출이 이루어지는 무통장방식의 예금으로 하고, 기타 예금은 3,000만원 이상 보유계좌로 하며, 세금우대저축은 2단계부터 통보대상에 포함시키는 변화가 있었다. 통보주기도 월 1회 통보하고 있는 무통장방식 예금은 월 1회, 나머지는 분기별 1회로 변경하고 통보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원칙적으로 모두 통보하되 몇 가지 생략, 예외 사항을 상세하게 하였다. 그 결과 1단계(1995. 1)에는 무통장방식 예금 3,000만원 이상 보유계좌, 2단계(1996. 1) 무통장방식 예금 1,000만원 이상 보유계좌, 세금우대저축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로 은행감독원에서 재무부 감사관실에 보낸 팩스자료에는 소요비용, 소요 일정, 사전안내 및 홍보 실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12월 30일에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시행이 전 금융기관 대표자에게 통보되었다(162쪽). 기본방침이 결정된 후 은행감독원과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들이 모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진 협의한 결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비용 및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기록물철의 160쪽 이하에 첨부되어 있다. 예컨대 조흥은행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예금주의 요청 또는 서면 동의없이 은행이 거래명세를 예금주 주소지로 우편 통보함으로써 예금주 수취 전에 제3자가 이를 선취하여 거래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을 경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저촉 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수차례 은행연합회는 실행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1995년 1월 21일에 전국은행연합회의 민원서류로 제출된 건의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반송계좌의 실명 확인증표 징구를 위한 근거지침 마련
- ② 우편물 습득으로 인한 제3자의 금융거래 정보 취득 시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4조에 대해 면책 및 수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 통보한 금융거래명세를 본인 이외의 자가 알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에서 제외(우편통보한 금융거래 명세가 도중에 유실되거나 제3자가 습득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된 지존파사건 등의 경우 책임소재 모호)
- ③ 거래명세의 해석
은행의 경우 통장 및 증서의 발행, 각종 전산기기의 장외 보급 ARS TELEBANKING의 확대 보급 등으로 별도의 입출금거래물 필요
- ④ 통장식으로 거래 중인 가계당좌예금은 무통장식 통보대상에서 제외, 수시입출의 통장식 예금에 준하여 처리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안)

관리번호 : BA0894237

쪽 수 : 28

생산년도 : 1997

생산기관 : 금융개혁위원회

이 기록물은 1997년 9월 26일에 금융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1997년 1월 한보 철강을 필두로, 삼미그룹(3월), 진로그룹(4월), 대농그룹(5월), 한신공영(6월), 기아그룹(7월)으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5월), 무역 및 자본자유화 확대(8월), 무디스 방한과 주식매매수수료의 자율화 시행(9월), 그리고 11월에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금융개혁위원회가 30차 회의를 통하여 제시한 안건이다.

본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장기금융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다. 장기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요인을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한 자금배분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의 형성이 저해되고,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가 추진되면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장기금융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였다.

보고서에서는 장기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제규모에 비하여 금융자산 축적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금융 연관 비율이 1980년 3.08%에서 1996년 말에는 5.55%를 기록했지만, 일본 8.43%, 미국 7.22%, 대만 6.11%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 금융자산 중 5년 이상 만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주식 및 출자금을 제외하면 5% 이하로, 채권도 5년 이상 만기채권의 발행규모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기간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장기금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자금의 단기화가 나타나고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기간 불일치로 기업경영

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단기부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부채를 갹신하면서 장기 자금수요에 대응하므로 유동비율, 운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결국 금융기관이 금융자산 전환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1년 이상 만기로 조달하여 1년 미만의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장단기 금리체계 형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장단기 금리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단기고율, 장기저율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의 기간별 체계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 위기 대처가 가능한데 이를 수행할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장기국채시장의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 외형상 건전재정 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의 재할인 등 금융부문이 수행하는 준재정 활동을 재정이 담당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국채발행을 충당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이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국채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재정의 경직성 심화와 금리 상승에 의한 민간 투자 구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채발행을 점차 확대하며 연기금 등에서 직접 자금을 차입하기보다는 장기 국공채를 실세로 발행하여 연기금이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채발행 종목을 표준화하고, 발행주기를 정례화하며 만기구조를 다양화해서 지표종목을 선정하여 육성할 것과 국채경쟁 매매시장의 조성 등을 추가로 제안하며 최종적으로는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3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

관리번호 : DA0851356

쪽 수 : 152

생산년도 : 1998

생산기관 : 재정경제부

이 기록물은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의 3가지 안이 확정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재정경제부의 공식 방안으로 제출된 내부 문서와 루빈 미 재무장관 면담 준비과정, 그리고 최종 법안의 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확대된 것이었고, 외자도입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당시 가장 긴급한 현안이었다. 이 기록물에는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검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IMF 관리 하에 외환거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고 정부의 제도개혁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은 1961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환율변동 폭 폐지)되었으며, 1999년에는 「외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외환거래 자유화의 조속 시행안과 단계별 시행안을 논의하면서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추진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998년 7월 「외국환거래법」안이 제출되기까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미국 재무부 등 각기 다른 요구와 제안이 수록되어 있다. 보다 조속한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입장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내에서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외환 규제 철폐가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철저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1998년 6월 국제금융국 외자관리과가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여 1998년 7월 재정경제부의 방안이 확정되어 법제처에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출, 상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외자관리과가 제시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은 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자의 원활

한 유입 촉진, ② 국내 경제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③ 외환관리 철폐를 통한 금융 개혁의 선도, ④ 기업금융 비용 경감과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기록물에는 이를 위하여 외환 규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과 2단계에 걸쳐 철폐하는 방안을 비교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총량 위주의 사전 규제를 사후 모니터 및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로 개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외환제도 도입과 동시에 외환 전산망을 통한 외화 유출입 동향 모니터, 단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방지시스템 개발 등 보완대책 수립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외자관리과에서는 6월 중 관계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완료하고, 조기 시행사항은 6월 중 「외환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에 따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은행연합회 등 실무 부서가 각각 작업과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외자관리과의 기록물을 검토한 종합안이 1998년 8월 재정경제부의 〈외환 거래의 자유화 방안〉이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세부 방안은 2단계 자유화였다. 1 단계 자유화(1999. 4. 1)에는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 촉진 및 국내 외환 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며 새로운 「외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2단계 자유화(2000년 말까지) 완료 시 OECD 규약의 총 91개 자본거래 항목 중 94%가 자유화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경제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본 도피, 조세 회피,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거래법 상의 유사시 안전장치〉라는 국제금융국의 별도 문서를 첨부하고 있다. 기존 「외국환관리법」에 Safeguard 조항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이 조항이 외환위기 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이 조항의 보강이 한국 정부의 개방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자본거래 허가제, 외화 가변예치 의무제, 외환지급 일시 정지제, 외환 집중제 등을 제안하였다. Safeguard 조항에 대해 재정경제

부 안과 외교통상부 안이 토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안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최종 조정안으로 수렴되었다.

〈루빈 재무장관 예상 질의사항〉은 국제금융과가 재정경제부의 6개 관련 부서에 게 업무협조를 요청한 공문으로, 1998년 6월 29일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재무부장관 면담시 예상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IMF 관리 하에서 외환자유화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보완장치의 마련 이후에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문상의 예상 질의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화 Hedge시장이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실수요원칙’을 내년 4월 이후에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더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외환브로커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고,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관리제도를 개편하여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보다 신중성있게 운용할 계획이며, ‘실수요원칙’을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투자 촉진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아직 외환시장이 불안하여 환시세 차액에 편승한 환투기(換投機)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폐지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소관 부서별 예상 질의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증권시장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에 발맞춘 제도정비(영문화, 시가평가, Hedge시장의 육성, 담보자산의 증권화 등) 개방요구(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 외국계 은행의 원화조달 확대, 계약직 직원 고용 확대에 대한 개선책)가 핵심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제출된 「외국환거래법」안은 국제 규범에 맞게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정리하되 긴급 안전장치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 하에 단계별 자유화의 추진으로 확정되었다. 허가·인가제를 등록·신고제로 전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8조, 15조) 가장 큰 변화였다.

한편, 유사시에 외국환거래에 대한 긴급 안전장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국제 규범에 맞게 조정하고 외환위기사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단기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 의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으로써 보완장치를 강력히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2차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금융기관 및 기

업의 외환거래 자유화 ⇨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가 1차로 추진되었고, 2002년부터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른 제도개혁과 선진화계획이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외환거래는 1961년부터 유지되어 온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Positive System)’에서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Negative System)’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